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	제출연월일	2026.08.19.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훈, 최종열

I. 제안내용

-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II. 주요골자

1. 세입

- 재산세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2. 세출

-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및 주요 현안사업 등

III. 예산안

(단위: 천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1,040,750,506	1,005,076,788	35,673,718	3.55%
일반회계	1,011,651,752	975,563,542	36,088,210	3.70%
특별회계	29,098,754	29,513,246	△414,492	△1.40%
의료급여기금	514,671	390,360	124,311	31.85%
건축안전	1,037,119	1,022,181	14,938	1.46%
주차장	27,546,964	28,100,705	△553,741	△1.97%

IV. 검토사항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총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40,750,506	1,005,076,788	35,673,718	3.55%
일	반 회 계	1,011,651,752	975,563,542	36,088,210	3.70%
특	별 회 계	29,098,754	29,513,246	△414,492	△1.40%
	의 료 급 여 기 금	514,671	390,360	124,311	31.85%
	건 축 안 전	1,037,119	1,022,181	14,938	1.46%
	주 차 장	27,546,964	28,100,705	△553,741	△1.97%

-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인 356억 7,371만 8천원이 증가한 1조 407억 5,05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0%인 360억 8,821만원이 증가한 1조 116억 5,175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0%인 4억 1,449만 2천원이 감소한 290억 9,875만 4천원임.

2.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1,011,651,752	100%	975,563,542	100%	36,088,210	3.70%
지 방 세 수 입	387,771,481	38.33%	370,583,768	37.99%	17,187,713	4.64%
세 외 수 입	115,663,796	11.43%	113,060,117	11.59%	2,603,679	2.30%
지 방 교 부 세	18,220,000	1.80%	18,220,000	1.87%	0	0.00%
조 정 교 부 금 등	34,792,635	3.44%	34,792,635	3.57%	0	0.00%
보 조 금	370,459,056	36.62%	366,921,001	37.61%	3,538,055	0.96%
보전수입 등 내 부 거 래	84,744,784	8.38%	71,986,021	7.38%	12,758,763	17.72%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은 없으며,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의 37.99%인 3,705억 8,376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나, 171억 8,771만 3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38.33%인 3,877억 7,148만 1천원이 편성되었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의 11.59%인 1,130억 6,011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6억 367만 9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11.43%인 1,156억 6,379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 보조금은 기정예산의 37.61%인 3,669억 2,100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35억 3,805만 5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36.62%인 3,704억 5,905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기정예산의 7.38%인 719억 8,602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127억 5,876만 3천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8.38%인 847억 4,478만 4천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29,098,754	100%	29,513,246	100%	△414,492	△1.40%
세 외 수 입	19,146,628	65.80%	19,146,628	64.87%	0	0.00%
보 조 금	601,341	2.07%	561,341	1.90%	40,000	7.13%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9,350,785	32.13%	9,805,277	33.22%	△454,492	△4.64%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 보조금은 기정예산의 1.90%인 5억 6,134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4,0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2.07%인 6억 134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기정예산의 33.22%인 98억 527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4억 5,449만 2천원이 감소하여 추경예산안의 32.13%인 93억 5,078만 5천원이 편성되었음.

3.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합 계	1,040,750,506	100.00%	1,005,076,788	100.00%	35,673,718	3.55%
일 반 회 계	1,011,651,752	100%	975,563,542	100%	36,088,210	3.70%
의 회 사 무 국	6,431,366	0.64%	6,316,708	0.65%	114,658	1.82%
감 사 담 당 관	293,649	0.03%	293,649	0.03%	0	0.00%
홍 보 담 당 관	2,252,313	0.22%	2,252,313	0.23%	0	0.00%
문 화 행 정 국	205,214,893	20.29%	198,019,986	20.30%	7,194,907	3.63%
밝 은 미 래 국	77,133,183	7.62%	75,357,855	7.72%	1,775,328	2.36%
주 민 생 활 국	549,535,541	54.32%	531,978,281	54.53%	17,557,260	3.30%
기 획 재 정 국	23,932,702	2.37%	24,285,323	2.49%	△352,621	△1.45%
공 간 혁 신 국	35,286,642	3.49%	33,909,573	3.48%	1,377,069	4.06%
도 시 관 리 국	4,254,492	0.42%	3,854,277	0.40%	400,215	10.38%
안 전 건 설 국	51,784,211	5.12%	47,497,563	4.87%	4,286,648	9.02%
보 건 소	55,532,760	5.49%	51,798,014	5.31%	3,734,746	7.21%
특 별 회 계	29,098,754	100%	29,513,246	100%	△414,492	△1.40%
의 료 급 여	514,671	1.77%	390,360	1.32%	124,311	31.85%
건 축 안 전	1,037,119	3.56%	1,022,181	3.46%	14,938	1.46%
주 차 장	27,546,964	94.64%	281,100,705	95.22%	△553,741	△1.99%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356억 7,371만 8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운영위원회 소관이 1개 부서에 1억 1,465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15개 부서에 265억 2,749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22개 부서에 94억 4,605만 7천원이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는 총 △4억 1,449만 2천원이 감소했는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1개 부서에 1억 2,431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1개 부서에 1,493만 8천원이 증가, 1개 부서에 △5억 5,374만 1천원이 감소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안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12개 부서에 304건 81억 2,692만 4천원이 증가되고, 5개 부서 6건에서 △1억 753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특별회계는 1개 부서에 5건 1억 2,431만 1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총합액
행정지원과	민간단체 보조금 이자 반납금	2,337	0	2,337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659	0	659
문화관광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이자 반납금	6,503	0	6,503
	문화예술자원 발굴 · 육성 이자 반납금	85	0	85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사용잔액	4,000	0	4,000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보조금(악학계범)[시]	42,000	45,500	△3,500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이자 반납금[시]	228	0	228
	탐플스테이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시]	1	0	1
	서초음악지구 육성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시]	47	0	47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이자 반납금[시]	1	0	1
자치행정과	2020 서초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이자 반납금	1	0	1
체육진흥과 (계속)	서초구체육회 운영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20	0	20
	서초구태권도시범단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5	0	5
	동체육회 사업지원 보조금 이자 반납금	26	0	26
	종목별 단체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금	20	0	2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633	0	633
	2025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이자 반납금	1	0	1
	2026 서울시민체육대축전 이자 반납금	1	0	1
	꿈나무 수영대회 이자 반납금	2	0	2
	서초구민체육대회 이자 반납금	37	0	37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지원 이자 반납금	9	0	9
	학교밖 프로그램 이자 반납금	26	0	26
	축구 · 풋살교실 운영 이자 반납금	10	0	10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3	0	3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이자 반납금 (80원)	0	0	0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총감액
체육진흥과	서초구체육회 운영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10,966	0	10,966
	동체육회 사업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3,006	0	3,006
	종목별 단체지원 사업 사용잔액	3,529	0	3,529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사업 사용잔액	12,772	0	12,772
	꿈나무수영대회 사용잔액	9	0	9
	서초구민체육대회 사용잔액	2,264	0	2,264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지원 사용잔액	4,594	0	4,594
	학교밖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사용잔액	2,001	0	2,001
	축구·풋살교실 운영 사용잔액	322	0	322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사용잔액	1,670	0	1,670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용잔액	2	0	2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6,231	0	6,23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26,812	0	26,812
	시군구체육회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62	0	62
	2024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6,512	0	21,775
	축구·풋살교실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307	0	307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시]	13,406	0	13,406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412	0	412
	햇돌햇돌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세]	331	0	331
일자리 경제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65	0	65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사용잔액	3,633	0	3,633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국]	21,021	13,330	7,691
	매력일자리사업(70%)[시]	251,650	273,125	21,475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시]	14,715	9,331	5,384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698	0	698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시]	9	0	9
	설·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206	0	206
아동청년과 (계속)	2024 4차산업칼리지 청년인턴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30	0	3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이자 반납금 (870원)	0	0	0
	구립유스센터 민간위탁금 이자 반납금	802	0	802
	우면산독서실 민간위탁금 이자 반납금	31	0	31
	구립유스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이자 반납금	6	0	6
	청소년 건강지원 이자 반납금	263	0	263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이자 반납금	97	0	97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이자 반납금	3,180	0	3,18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2,185	0	2,185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 총감액
아동청년과 (계속)	아동학대전담 상담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2	0	2
	찾아가는 상담실(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 이자 반납금	35	0	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이자 반납금	807	0	807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44	0	44
	2024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62	0	62
	아동청소년 축제 운영보조금 이자 반납금	9	0	9
	아동친화도시 조성 운영보조금 이자 반납금	7	0	7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지원 이자 반납금	2	0	2
	청소년 건강지원 사용잔액	5,175	0	5,17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용잔액	5,450	0	5,450
	아동급식카드(꿈나무) 급식비 착오 지급에 따른 환수	14	0	14
	방배유스센터 1년 미만 퇴사자 퇴직 적립금 반납	1,277	0	3,448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조금 사용잔액	633	0	633
	방배유스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 부가가치세 환수금	217	0	217
	청년 취업연계과정 운영 이자 반납금[국]	48	0	48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조금 이자 반납금[국]	22	0	22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국]	556	0	556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이자 반납금[국]	21	0	21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국]	694	0	694
	청소년 건강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4,661	0	77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장려금 이자 반납금[국]	10	0	10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용잔액[국]	6,260	0	6,2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국]	233	0	2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이자 반납금[국]	268	0	268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국]	44	0	4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사용잔액[국]	525	0	52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자 반납금[국]	275	0	275
	2024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이자 반납금[국]	62	0	62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129	0	129
	청년 취업연계과정 운영 이자 반납금[시]	56	0	56
	2023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45,168	0	45,168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28,470	0	28,470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시]	556	0	556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이자 반납금[시]	21	0	21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시]	694	0	694
	청소년 건강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5,438	0	5,438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장려금 이자 반납금[시]	10	0	10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 총감액
아동청년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용잔액[시]	6,260	0	6,26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시]	233	0	233
	아동학대전담 상담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시]	2	0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이자 반납금[시]	268	0	268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시]	44	0	4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사용잔액[시]	525	0	52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자 반납금[시]	275	0	275
	2024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이자 반납금[시]	62	0	62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534	0	534
	1인가구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919	0	1,919
	아동친화도시 조성 자치구 특화사업 이자 반납금[시]	1	0	1
	서울청년센터 보조금 이자 반납금[시]	415	0	415
교육지원과	서초구 공공도서관 위탁비 이자 반납금	2,570	0	2,570
	초등학교 1인1악기 운영 이자 반납금	296	0	296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176	0	176
	서초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이자 반납금	2,894	0	2,894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공모사업 이자 반납금	5	0	5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용잔액	178,861	0	178,861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사업 사용잔액 (200원)	0	0	0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사용잔액	101,132	0	101,132
	초중고 입학준비금 사용잔액	26,663	0	26,663
	학교 급식 지원 사용잔액	117,990	0	117,990
	서초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사용잔액	6,996	0	6,996
	서초미래교육지구 학교선택제사업 사용잔액	86	0	86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공모사업 사용잔액	1,027	0	1,027
	서초구 공공도서관 위탁비 사용잔액	292,918	194,715	98,203
	초등학교 1인1악기 운영 사용잔액	25,393	0	25,393
	2024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58,220	0	58,220
	2024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58,220	0	58,220
	2024 자치구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작은)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시]	1,034	0	1,034
	자치구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공공·작은·장애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5,507	0	5,507
	서울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시]	1	0	1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44	0	144
기후환경과	서초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6,832	0	6,832
	서초구환경교육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132	0	132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	32,000	0	32,000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총감액
복지정책과	일상돌봄 서비스 이자 반납금	48	0	4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자 반납금	1,506	0	1,506
	권역별 민관협의체 사업비 이자 반납금	47	0	47
	민관 협력기반 확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자 반납금	989	0	989
	성심원(중간의 집) 매각수입	586,011	0	586,011
	일상돌봄 서비스 사용잔액	447	0	44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용잔액	37,995	0	37,995
	20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환수금	292	0	292
	2020~202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 반납금	62,205	0	62,205
	인력운영비(드림스타트)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시]	△1	0	△1
	일상돌봄 서비스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992	0	99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80,003	0	80,003
	일상돌봄 서비스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496	0	496
	민관 협력기반 확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344	0	34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40,501	0	40,501
사회복지과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이자 반납금	14,969	0	14,969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 이자 반납금	1,463	0	1,463
	장애인행복여행 이자 반납금	9	0	9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이자 반납금	12	0	1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4,547	0	4,547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자 반납금	426	0	426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이자 반납금	10	0	10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60	0	60
	서초수어통역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5	0	5
	장애인 행사지원(수어교실) 이자 반납금	3	0	3
	장애인복지일자리 이자 반납금	664	0	664
	장애인일반형(전일제)일자리 이자 반납금	2,242	0	2,242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이자 반납금	19	0	19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103	0	103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23	0	23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1	0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59	0	59
	사회복지시설(장애인,자활) 생일격려품비 이자 반납금	1	0	1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총감액
사회복지과 (계속)	서초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운영비 이자 반납금	4	0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	26	0	26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지원 이자 반납금	65	0	65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6,366	0	6,366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26,460	0	26,460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용잔액	1	0	1
	서초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용잔액	1,109	0	1,109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용잔액	10,301	0	10,301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사용잔액	134,339	0	134,339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용잔액	107,161	0	107,161
	서초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용잔액	441	0	441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용잔액	25,567	0	25,567
	장애인일반형(전일제)일자리 사용잔액	5,574	0	5,574
	장애인일반형(시간제)일자리 사용잔액	8,680	0	8,680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용잔액	938	0	938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 사용잔액	5,941	0	5,94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용잔액	1,871	0	1,871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사용잔액 (460원)	0	0	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용잔액	7,589	0	7,589
	서초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용잔액	12	0	12
	장애인 행사지원(장애인 행복여행) 사용잔액	1,417	0	1,417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지원 사용잔액	20,700	0	20,70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사용잔액	7,048	0	7,048
	2021~2024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사용잔액	10,182	0	10,182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위탁업무비 사용잔액	463	0	463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50%)[국]	431,782	416,015	15,76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국]	30,743,984	29,377,092	1,366,892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비(60%)[국]	1,280,412	1,261,635	18,777
	자활성공지원금 지원(60%)[국]	4,344	12,252	△7,908
	지역자활센터 운영(50%)[국]	223,763	215,147	8,616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27.5%)[시]	237,480	228,808	8,672
	기초생활수급자급여[시]	14,347,192	13,709,309	637,883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비(28%)[시]	597,526	588,763	8,763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시]	2,027	5,718	△3,691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총감액
사회복지과 (계속)	지역자활센터운영(25%)[시]	151,294	149,872	1,422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시]	79,512	0	79,512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82,858	0	82,858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용잔액 및 이자[국]	23,530	0	23,530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20,267	0	20,267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2,300	0	2,30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162	0	16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65,122	0	65,12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32,874	0	32,87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 일대일 지원)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6,533	0	6,533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22,494	0	22,494
	장애인일반형(전일제)일자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6,703	0	6,703
	장애인일반형(시간제)일자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8,658	0	8,658
	장애인연금 사용잔액[국]	1,416	0	1,416
	장애수당-기초 사용잔액[국]	140	0	140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용잔액[국]	55	0	55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1,915	0	1,915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국]	67,064	0	67,064
	2021~2024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50,910	0	50,910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7,550	0	7,550
	자활사례관리 지원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7	0	7
	자활성공지원금 사용잔액[국]	6,126	0	6,126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41,429	0	41,429
	자활사례관리 지원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4	0	4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3,776	0	3,776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1,765	0	11,765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091,670	0	1,091,670
	장애인활동지원운영(활동지원수당)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66,450	0	66,450
	장애인활동지원운영(중증전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23,597	0	23,597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20,267	0	20,267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2,300	0	2,30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62	0	16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65,122	0	65,12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32,874	0	32,874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총감액
사회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 일대일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6,533	0	6,533
	서초수어통역센터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784	0	1,784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시]	26,231	0	26,231
	장애인일반형(전일제)일자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7,817	0	7,817
	장애인일반형(시간제)일자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0,099	0	10,099
	장애인연금 사용잔액[시]	708	0	708
	장애수당-기초 사용잔액[시]	98	0	98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용잔액[시]	38	0	38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957	0	95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2,130	0	2,130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디지털콘텐츠활용사업 이자 반납금[시]	2	0	2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53	0	53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93,587	0	193,587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31,298	0	31,298
	2021~2024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23,758	0	23,758
	자활성공지원금 사용잔액[시]	2,859	0	2,859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이자 반납금[시]	7	0	7
	서초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109	0	1,109
여성보육과 (계속)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자 반납금	9,937	0	9,937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이자 반납금	143	0	143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자 반납금	459	0	459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자 반납금	155	0	155
	첫만남이용권 이자 반납금	5,101	0	5,10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이자 반납금	5,055	0	5,055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자체) 이자 반납금	32	0	3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구비) 이자 반납금	46	0	46
	서초 아이돌보미 · 손주돌보미 이자 반납금	1,051	0	1,051
	출생가정 정서지원 이자 반납금	43	0	43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운영비(구비) 이자 반납금	50	0	50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인건비(구비) 이자 반납금	20	0	20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이자 반납금	2,468	0	2,468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용잔액	37	0	37
	202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용잔액	13,098	0	13,098
	2024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용잔액	979	0	979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용잔액	325	0	325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 총감액
여성보육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용잔액	200,487	0	200,487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자체) 사용잔액	48,187	0	48,187
	여성가족부 아이돌봄(구비) 사용잔액	5,930	0	5,930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사용잔액	360,148	0	360,148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사용잔액	1,988	0	1,988
	서초구립 우면동 초등키움센터 임차보증금 반환금	100,000	0	100,000
	서울시 자체 보육사업[시]	6,157,739	6,183,998	△26,259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자 반납금[국]	27,100	0	27,100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344	0	344
	2024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용잔액[국]	18,477	0	18,477
	2024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용잔액[국]	1,398	0	1,398
	2025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보조금발생 이자 반납금[국]	311	0	311
	첫만남이용권 이자 반납금[국]	8,347	0	8,347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176,179	0	176,179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운영비(국비) 이자 반납금[국]	2	0	2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인건비(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78	0	78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국]	17,196	0	17,196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자 반납금[시]	23,186	0	23,186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172	0	172
	2024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퇴직적립금) 사용잔액[시]	30,791	0	30,791
	2024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퇴직적립금)[시]	2,284	0	2,284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 이자 및 이자 반납금[시]	1,624	0	1,624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자 반납금[시]	155	0	155
	첫만남이용권 이자 반납금[시]	5,101	0	5,10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205,541	0	205,54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자체)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70,107	0	70,107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운영비(시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3,396	0	3,396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인건비(시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22,915	0	22,915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시]	32,632	0	32,632
	서초구가족센터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시]	35,849	0	35,849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이자 반납금[시]	19,782	0	19,782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용잔액[시]	205,750	0	205,750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용잔액[시]	3,335	0	3,335
어르신 행복과	기타이자수입	9,765	5,000	4,765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퇴직적립금 및 이자 반납금	990	0	990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퇴직적립금 반납금	1,309	0	1,309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방배노인종합복지관)[시]	1,003,833	1,070,012	△66,179

부 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어르신 행복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 퇴직적립금 및 이자 반납금[시]	405	0	405
	50플러스센터 보조금 이자 반납금[시]	55	0	55
	경로당 운영보조금 이자 반납금[시]	47	0	4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15,180	195,180	20,000
	시·도비 보조금	215,180	195,180	20,000
	순세계잉여금	81,545	0	81,545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3	0	1,383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83	0	1,383

2. 세출예산안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65억 2,749만 5천원, 특별회계 1억 2,431만 1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행정지원과 (p171)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1,340,466	1,322,226	18,240
	기관공통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	125,398,713	123,888,615	1,510,098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3,129	0	3,129
문화관광과 (p173)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314,100	1,244,100	70,000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109,696	87,696	22,000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808,664	761,264	47,400
	국가유산 관리	61,500	66,500	△5,0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131,650	0	131,650
자치행정과 (p175)	동행정 운영	4,488,619	4,440,619	48,000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242,539	209,039	33,500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특교금)	303,706	247,720	55,986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3,769,304	0	3,769,304
체육진흥과 (p177)	공공체육시설 확충	2,434,000	1,217,000	1,217,000
	생활체육교실 운영	204,940	203,020	1,920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1,389,498	1,359,498	30,0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3,521,722	3,281,179	240,543
오케이 민원센터 (p18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1,137	0	1,137
일자리경제과 (p183)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1,001,400	501,400	500,000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	630,116	280,116	350,000
	골목상권 활성화	1,509,700	1,349,700	160,000
	서초AICT센터 운영	6,081,490	5,984,490	97,000
	매력일자리사업	359,500	390,180	△30,680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42,042	26,660	15,382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200,348	0	200,348
아동청년과 (p187)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141,522	0	141,522
교육지원과 (p189)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650,237	0	650,237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180,865	0	180,865
기후환경과 (p191)	기후환경교육	187,320	155,320	32,0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139,431	0	139,431
스마트도시과 (p193)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183,214	154,214	29,000
	착한 서초코인 운영	234,060	199,060	35,000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	73,829	835,400	△761,571
	보전지출(국시비 보조금 반환)	36,794	0	36,794
복지정책과 (p197)	동단위 사례관리 추진	228,614	220,614	8,000
	찾아가는 복지 사업 활성화	39,380	39,055	32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5,673,659	5,653,672	19,987
	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	249,182	233,592	15,590
	인력운영비(드림스타트)	252,941	251,921	1,020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6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711,455	0	711,455
	내부거래지출	586,011	0	586,011
사회복지과 (p20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863,564	832,030	31,534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51,689	447,355	4,334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2,513,046	2,420,160	92,886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140,165	135,346	4,819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432,086	232,086	200,000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0,368,180	28,722,180	1,646,000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20,754,543	20,122,390	632,153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58,944	53,250	5,694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2,134,020	2,102,724	31,296
	지역자활센터 운영	494,290	479,942	14,348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7,240	20,420	△13,180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52,830	41,457	11,373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2,508,966	0	2,508,966
여성보육과 (p210)	어린이집 운영지원(시비)	2,457,682	2,479,352	△21,670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2,302,115	2,332,963	△30,848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4,521,047	4,461,047	60,000
	서초 초등키움센터 설치비 지원	425,900	782,800	△356,900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487,500	420,000	67,50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2,026,655	0	2,026,655
어르신행복과 (p216)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686,131	0	686,131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운영지원	3,396,441	3,381,041	15,400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1,061,903	981,367	80,536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5,650,290	5,592,919	57,371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15,244,076	6,809,955	8,434,121
청소행정과 (p22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26,353	0	26,353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추경안 쪽수)	사 업 명	최종 예산안	2025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액
사회복지과 (p30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사업	430,360	390,360	40,0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지출	84,311	0	84,311

V. 검토의견

세 입 분 야

밝은미래국

【교육지원과】

□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용잔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용잔액	178,861	0	178,861

○ 사용잔액 발생 및 세입편성 사유

-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맞춤형 진학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번 세입예산은 각 학교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실제 집행잔액 178,861천원을 반환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용잔액이 사업 종료 및 정산에 따라 확정됨에 따라 이를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임.

- 따라서 금번 세입 추경은 보조사업의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지출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미 집행·정산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사용잔액을 반환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반환금의 발생 및 정산내역과 세입편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잔액 발생 규모 및 세부내역

- 사용잔액 세부내역을 보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총 45개교에서 178,861,746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학교별 반납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용잔액 세부내역(178,861,746원)

(단위 : 원)

연번	구분	학교명	반납액	연번	구분	학교명	반납액	연번	구분	학교명	반납액
1	초	계성초	1,065,540	16	초	우면초	3,486,160	31	중	신동중	1,142,300
2	초	교대부초	1,505,656	17	초	우솔초	709,120	32	중	언남중	59,040
3	초	매현초	666,900	18	초	우암초	62,680	33	중	영동중	1,531,520
4	초	반원초	1,900,360	19	초	원명초	3,626,900	34	중	원촌중	277,000
5	초	방배초	17,247,880	20	초	원촌초	4,057,510	35	중	이수중	4,936,592
6	초	방일초	4,331,060	21	초	이수초	2,087,000	36	고	동덕여고	735,300
7	초	방현초	1,900,000	22	초	잠원초	12,273,530	37	고	반포고	431,260
8	초	서래초	6,269,172	23	중	경원중	330,950	38	고	서울고	510,120
9	초	서원초	13,827,350	24	중	내곡중	16,127,520	39	고	서울웹툰고	19,820
10	초	서이초	5,522,630	25	중	동덕여중	1,969,980	40	고	세화고	12,709,678
11	초	서일초	486,030	26	중	방배중	1,130,740	41	고	세화여고	13,005,000
12	초	서초초	12,223,240	27	중	서문여중	265,000	42	고	양재고	2,770,600
13	초	신동초	1,563,000	28	중	서운중	1,809,880	43	고	언남고	1,778,478
14	초	양재초	2,064,000	29	중	서초중	2,361,010	44	기타	다니엘학교	961,000
15	초	언남초	6,349,520	30	중	세화여중	10,772,200	45	기타	서울미래학교	1,520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방배초 17,247,880원, 내곡중 16,127,520원, 서원초 13,827,350원, 세화여고 13,005,000원, 세화고 12,709,678원,

잠원초 12,273,530원, 서초초 12,223,240원 등 1천만원을 초과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반납액이 발생한 학교가 있는 반면, 서울웹툰고 19,820원, 서울나래학교 1,520원 등 소액의 잔액도 발생하고 있어 학교별 사업내용과 계약규모, 낙찰률 및 실제 집행여건 등에 따라 반납액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학교별 반납액의 편차가 큰 만큼, 단순히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인지,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비 절감, 실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납액이 큰 학교를 중심으로 잔액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환금의 세입편성 적정성

- 보조사업의 집행이 완료된 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받는 것은 보조금의 사후관리 및 재정수입의 정확한 계상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 할 것임.
- 따라서 금번 178,861천원이 각 학교의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서 반환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이라면, 이를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회계상 실제 발생한 수입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세입편성의 적정성은 반환금의 총액 자체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 정산내역과 반환금액의 산정근거가 명확하고, 당초 교부목적에 따

른 사업 집행 여부 및 잔액 발생 사유가 적정하게 확인되었는지를 전제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관리

- 아울러 일부 학교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잔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잔액이 일회성 낙찰차액에 따른 것인지 또는 사업계획 및 교부액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반복적으로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학교나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잔액 발생원인을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계획 및 사업비 산정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교육경비 재원이 실제 교육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종합하면,

- 금번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사용잔액 178,861천원의 세입편성은 학교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반환받아 세입으로 계상하는 사항으로, 반환금의 발생 및 산정내역과 반환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세입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 다만 총 45개교에서 178,861,746원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학교별 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특히 반납액이 큰 학교를 중심으

로 잔액 발생이 단순한 낙찰차액인지, 사업계획 변경이나 실제 집행수요의 감소 등에 따른 것인지 그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향후 보조금 교부액 산정과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 따라서 금번 세입편성은 실제 정산·반환이 확정된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계상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학교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잔액 발생요인을 보완함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사용잔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사용잔액	101,132	0	101,132

○ 사업 개요

-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공교육을 통한 원어민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을 신청한 관내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명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 대상은 2025년도 사업을 신청한 관내 중학교 10개교로, 방배중·서운중·동덕여중·서일중·세화여중·신동중·신반포중·언남중·원촌중·이

수중이며, 경원중·내곡중·서문여중·서초중·영동중 등 5개교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 지원기간은 당초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였으며, 인건비는 급여, 주거비, 보험료, 퇴직금 및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서초구가 서울시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하면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 시교육청이 학교별 집행내역을 정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을 서초구에 반납하는 구조임.

○ 사용잔액 발생 및 반납 사유의 적정성

- 이번 세입예산 101,132천원은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교육청 교부예산의 집행잔액과 2026년 1~2월분 중복 지급액의 반납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재원이 아니라 기존 교부사업의 정산에 따라 반환받는 세입임.
- 특히 기존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교부 및 지원기간이 전년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운영되는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예산운용방식이 변경되어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기간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방식에 따라 교부된 2025년도 예산 중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지원분과 변경된 2026년도 예산 간 2개월의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25년도 시교육청 교부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2026년 1~2월분과 변경된 예산운용방식에 따른 2026년도 1~2월분이 중복

지급되었고, 해당 중복분 전액이 반납되면서 일반적인 사업 집행잔액 외에 추가적인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01,132천원 전액이 단순한 2025년도 사업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이 중 2026년 1~2월 중복 지급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사용잔액 발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입 편성액에 대한 구체적인 반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학교별·항목별 집행잔액과 중복 지급에 따른 반납액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급여·주거비·보험료·퇴직금 등 인건비 구성항목별 잔액 발생 원인도 함께 확인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반납액의 상당 부분이 사업 자체의 집행 부진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사업비 교부 및 예산운용방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기간 중복에 따른 반납금이라면, 향후 동일한 방식의 예산 중복교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 전환에 따른 교부기준과 지원기간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세입 편성의 적정성

- 이번 세입예산은 시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정산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서초구에 반납함에 따라 이를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미 발생한 반환금에 대한 세입 조치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또한 해당 사업은 전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학교를 결정하고 시교육청을 통해 사업비를 교부하는 구조인 만큼, 서초구가 사업 집행과정

에서 학교별 집행액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번 세입 편성 자체의 적정성보다는 반납액 101,132천원의 산출근거와 정산 결과가 실제 집행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026년부터 사업기간 및 예산운용방식이 변경된 만큼,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기간과 새로운 사업기간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시교육청의 변경된 교부방식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교부·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의 사용잔액 101,132천원은 2025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운용방식 변경에 따라 중복 지급된 2026년 1~2월분의 반납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편성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전체 반납액 가운데 실제 사업 집행잔액과 예산운용방식 변경에 따른 중복 지급분의 규모 및 발생 원인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26년부터 지원기간이 변경된 과정에서 2개월간의 중복 지급이 발생한 만큼 향후에는 연도별 사업기간과 예산교부 시기를 면밀히 조정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101,132천원의 세입 편성은 시교육청의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 반납내역

및 중복 지급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향후 예산운용방식 변경에 따른 교부·정산 과정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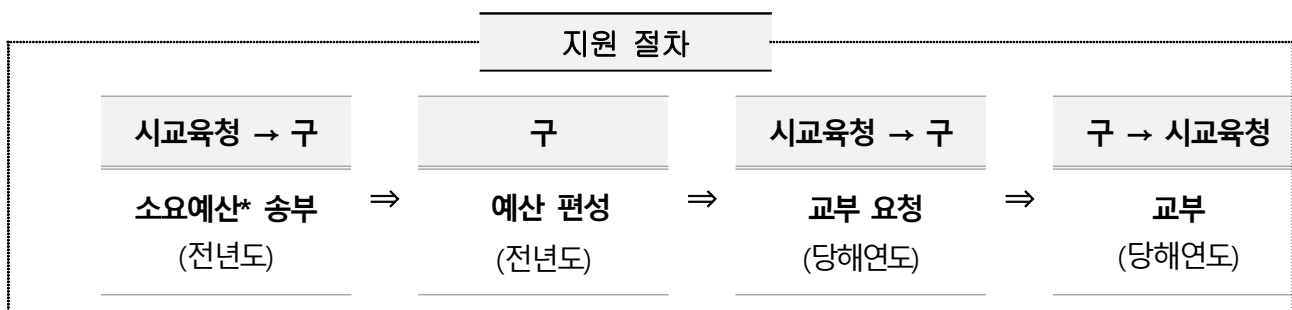
□ 학교 급식 지원 사용잔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학교 급식 지원 사용잔액	117,990	0	117,990

○ 사업 개요

-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관리비와 조리종사원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급식비는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의 부담률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며, 자치구는 서울시교육청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급식비는 학생 수,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년도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치구별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당해연도에 월별로 교부하는 구조로 그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고,



- 아울러 사업비 정산은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의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받아 자치구에 정산자료를 송부하고, 집행잔액을 자치구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

- 2025년도에는 관내 72개교, 42,766명을 대상으로 총 7,437,852,85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7,319,862,430원을 집행하고 117,990,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잔액 발생내역을 보면 식품관리비에서 75,344,520원, 인건비에서 42,645,900원이 발생하여 전체 잔액 중 각각 약 63.9%와 36.1%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체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은 약 1.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집행잔액 현황 등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잔액 발생 사유
총 계	7,437,852,850	7,319,862,430	117,990,420	
식품관리비	6,453,963,020	6,378,618,500	75,344,520	학생수, 수업일수 등 변동
인건비	983,889,830	941,243,930	42,645,900	조리종사원 퇴직 등 신분변동

- 한편, 2026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73개교, 43,043명을 대상으로 4,564,205,16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의 급식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금회 세입예산에 편성된 사용잔액은 2025년도 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납금임.

○ 사용잔액 발생 사유의 적정성

-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통보한 자치구별 소요 예산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사업연도에는 학생 수, 수업일 수, 급식단가 및 학교별 급식 운영여건 등에 따라 급식비가 집행되는 구조이므로, 예산 편성 당시의 예상 규모와 실제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히 학생 수의 전·출입에 따른 증감, 학교별 실제 급식일수의 변동 등은 당초 소요예산 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식품관리비에서 75,344,52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인건비의 경우 조리종사원의 퇴직 등 신분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 대상 및 지급기간이 당초 예상과 달라지면서 42,645,9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인건비 역시 실제 근무인원 및 근무기간에 따른 집행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특히 전체 교부액 74억 3,785만원 가운데 약 1억 1,799만원이 미집행되어 반납되는 만큼, 잔액 규모 자체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나, 식품관리비와 인건비 모두에서 일정 규모의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도별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세입 편성의 적정성

- 금회 편성한 117,990천원은 2025년도 학교 급식 지원사업의 실제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반납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입원의 발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교부한 사업

비에 대한 정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세부적으로 식품관리비 75,344,520원과 인건비 42,645,90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학생 수·수업일수 변동 및 조리종사원의 퇴직 등 실제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정산 결과에 따른 세입 편성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동일 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소요예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생 수 및 급식일수 등 실제 집행여건의 변동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회 세입예산은 2025년도 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받아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 편성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 2025년도에는 72개교 42,766명을 대상으로 74억 3,785만원을 지원하고 이 중 73억 1,986만원을 집행하여 약 1.6%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잔액은 학생 수·급식일수 등 변동에 따른 식품관리비와 조리종사원의 퇴직 등 신분변동에 따른 인건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따라서 117,990천원의 사용잔액 세입 편성은 실제 사업 집행 및 정

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이라는 점에서 걱정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전년도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액 간 차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후환경과】

□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	32,000	0	32,000

○ 사업 개요

-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관내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탄소중립 실천행사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데 활용 예정임.
-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연극, 활동지와 연계한 체험수업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자원순환·생태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 사업의 추진근거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

례」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지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른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이 제시되어 있음.

○ 기부금 세입 편성의 적정성

- 금회 편성하는 32,000천원은 (주)기아와 환경분야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2026년 4월 16일 지원이 확정된 기부금으로, 이후 제78차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지원 여부와 기부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기부금 지원이 확정되고 기부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확정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증액 편성의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 특히 해당 기부금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재원으로 서 구의 일반재원과 성격이 다르므로, 기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입 편성과 함께 그에 대응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기부금의 세입 편성 및 세출 집행에 있어서는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실제 사업 추진 시 기부금의 취지와 당초 협의된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 이번 기부금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에 활용할 예정으로, 기부금의 사용 목적과 세출사업 간 연계성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찾아가는 환경교육, 환경연극 및 체험수업 등은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에너지·자원순환·생태 분야의 실천행사와 캠페인은 교육을 실제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 다만, 사업기간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약 4개월에 불과한 만큼, 32,000천원의 기부금이 단기간에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계획과 대상인원, 교육횟수, 행사규모 및 세부 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부금이 환경교육이라는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단순한 행사 개최 실적에 그치지 않고 참여 학생 수, 교육 횟수,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등 사업성과를 관리하여 향후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추경 편성의 필요성

- 금회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민간기업의 기부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재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기부금 지원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본예산 미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기부금 32,000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동일 금액을 환경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인 만큼, 기부금 수입과 그 사용처를 예산에 명확히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다만, 추경 편성 이후 실제 기부금 수납 여부와 세출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부금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기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 32,000천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민간기업의 지원 여부와 기부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주)기아의 기부금 지원이 확정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을 통한 세입 편성의 사유와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 또한 해당 재원을 환경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기부금의 목적과 세출사업 간 연계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하여 구의 환경교육 사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이며,
- 다만, 사업기간이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단기간 내 기부금이 소진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업대상과 프로그램별 세부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기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투

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복지정책과】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5,124,517	22,683,288	586,011

○ 성심원 중간의 집 매각대금의 세입 귀속

- 성심원 중간의 집 매각대금 586,011천원은 2025년 10월 공개매각에 따른 최종 낙찰 이후 2025년 12월 26일 전액 수납되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실제수납 처리된 재원으로 확인됨.
- 실제 2025년도 결산에서도 본 건의 예산현액은 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이 각각 586,01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해당 매각대금은 이미 2025회계연도의 세입으로 결산에 반영된 상태임.
- 따라서 2026년도 현재 해당 금액은 신규로 발생한 세입이 아니라 2025회계연도 결산을 거쳐 일반회계의 재원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수납 재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2025년도 결산 검토에서도 본 건은 행정목적이 종료된 공유재산을 공개매각하여 재정수입

을 확보하고 이를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진흥계정)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으로 검토된 바 있어, 매각 및 세입처리 자체에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26년 추정 세입의 중복편성 여부

-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해당 매각대금 586,011천원을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다시 세입에 편성하는 한편, 동일 금액을 사회복지기금 전 출금으로 세출에 편성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금액은 이미 2025년도에 실제수납이 완료되어 2025회 계연도 세입으로 결산된 재원이므로, 이를 2026년도 세입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경우 동일한 수입원을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중복 계상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
- 특히 2026년도 추경에서 편성되는 세입은 해당 연도에 새롭게 발생하거나 추가로 징수되는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전년도에 수납되어 결산까지 완료된 금액을 동일 세입과목으로 다시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회계연도 구분 및 세입예산의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추정 정정 및 향후 기금전출

- 본 건 매각대금은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진흥계정)의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라는 점에서, 그 매각수입을 동일 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진흥계정)으로의 전출 절차가 필요함.

- 다만 2025년에 이미 수납된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추경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86,011천원의 세입 편성을 감액하여 중복 계상을 해소하고, 이에 연계된 기금전출금 586,011천원도 함께 감액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만약 이번 추경에서 세입예산만 감액하고 기금전출금은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반회계 전체의 세입·세출 균형을 별도로 조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세입 또는 세출예산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본 건 세입·세출을 함께 감액하여 예산편성상 오류를 바로잡고, 이미 일반회계에 귀속되어 있는 해당 재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 별도의 세입 편성 없이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만 편성하여 기금으로 귀속하는 방안이 회계처리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임.
- 이 경우 2027년도 기금전출금 편성 시에는 해당 금액이 2025회계연도에 이미 일반회계 세입으로 수납·결산된 재원임을 명확히 하고, 전출의 근거 및 재원 성격을 예산서와 관련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동일 재원의 중복 계상이나 회계처리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건 586,011천원은 성심원 중간의 집 매각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 전액 수납되어 이미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된 재원으로, 2026년도 현재 신규 세입이 아니라 전년도 결산을 거쳐 일반회계에 잔존하고 있는 재원임. 따라서 이를 2026년도 제2회 추경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다시 세입 편성한 것은 동일 재원의 중복 편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해당 매각대금을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진흥계정)에 귀속시키려는 취지는, 당초 해당 재산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재산 취득 및 운용의 경위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귀속을 위해 필요한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은 이미 수납·결산된 재원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번 추경에서 이를 다시 세입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번 추경에서는 중복 편성된 세입과 이에 대응하는 세출을 함께 감액하여 예산편성상 오류를 정정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서 세입의 추가 편성 없이 기금전출금만 편성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향후에는 전년도 결산에서 이미 세입으로 확정된 재원을 다음 연도 추경에서 동일 세입과목으로 재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자료와 추경 편성자료 간 재원 귀속 및 수납 여부를 사전에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사용잔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사용잔액	134,339	0	134,339

○ 사업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7조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 및 시비 추가지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 성인 발달장애인과, 와상·사지마비 등 최종증 독거 장애인으로 활동보조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 시간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월 30시간, 최종증 독거장애인은 대상자별로 월 50시간, 69시간, 150시간 또는 200시간이며, 지원단가는 시간당 주간 16,620원, 심야 및 공휴일 24,930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사용잔액 발생 및 세입 편성 구조

- 본 사업은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고, 실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제공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당초 예탁한 사업비 전액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을 거쳐 구에 환급되는 구조로 보임.

- 이번 추경에 편성된 134,339천원은 이와 같은 정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전년도 사업비 사용잔액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아직 실제 집행 및 정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기정액을 편성하지 않고, 정산을 통해 확정된 환급액을 금회 추경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기정액이 0원인 것은 본 사업의 사용잔액이 사업 집행 및 정산 이후 확정되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을 추경 세입에 반영하여 세입의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용잔액 규모 및 발생 사유의 적정성

- 2025년도 구비 사업비는 총 532,474,000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였으며,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산액은 398,134,950원, 사용잔액은 134,339,050원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예탁금 대비 사용잔액은 약 25.2%로,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집행부는 사용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예탁된 사업비가 실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되므로, 실제 이용자 수와 서비스 이용량의 변동에 따라 예탁금과 실제 비용지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의 집행방식을 고려할 경우 대상자의 서비스 미이용이나 이용시간 감소 등에 따라 당초 예탁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잔액 규모가 134,339천원으로 예탁액의 25.2%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개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량 변동에 따른 잔액으로만 보기보다는 당초 예산 산정 시 예상한 지원대상자 및 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실적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사업은 국고보조 및 시비 지원에 더하여 구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이 과다하게 예탁되어 상당 규모의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추가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이용현황과 미이용 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세입 편성의 적정성

- 금회 세입예산 134,339천원은 2025년도 구비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후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정산·환급받은 금액으로, 전년도 사업의 집행 결과에 따른 반환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정산에 따라 확정된 사용잔액을 추경 세입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점과 사업 정산 시점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세입 편성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예탁액 대비 사용잔액이 25.2%에 달하는 만큼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대상자별 서비스 이용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예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집행된 구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은 기본적인 국고보조 및 시비 지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돌봄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성인 발달장애인 및 최중증 독거장애인 등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 금회 세입예산 134,339천원은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후 실제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사용잔액을 환급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액이 없는 것은 사용잔액의 특성상 본예산 편성 당시 확정되지 않은 재원을 추후 정산 결과에 따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세입 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 다만, 예탁액 532,474천원 중 398,134,950원이 실제 정산되고 134,339,050원, 즉 25.2%가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만큼 그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실제 지원대상자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실제 돌봄 수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추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용잔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용잔액	107,161	0	107,161

○ 사업 개요

-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사랑의복지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구 시책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65%, 구비 35%의 재원분담 구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 후 각 복지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와 함께 직원 복지포인트, 시·구 정책사업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총 4,386,891천원의 운영비 등이 교부되었음.

○ 사용잔액 발생 및 세입 편성 구조

- 금번 추경에 편성된 107,161천원은 2025회계연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된 후 확정된 구비 사용잔액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퇴직적립금·사회보험료 등의 정산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25회계연도 운영비 정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2026년 초 확정되었으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정확한 반환액을 확정하기 어려웠던 만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으로 계상하는 구조이며, 세부적으로는 복지관 운영비 등의 구비 집행잔액 103,946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액과 휴직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정산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사용잔액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원)		
연 번	전 체 내 역	금 액
	합 계	107,161,550
1	202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집행잔액 반납(구비분)	103,946,070
2	2025년 장애인복지관(사랑의복지관) 1년미만 중도퇴사자(3명)의 퇴직적립금 반납	2,611,570
3	2025년 장애인복지관(한우리정보문화센터) 1년미만 중도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	468,930
4	장애인복지관(한우리정보문화센터) 2025년 무급휴가자의 인건비 보조금 반납	59,470
5	2025년 장애인복지관(한우리정보문화센터) 사회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75,510

- 위 세부내역을 보면 금번 세입 편성액의 약 97%가 복지관 운영비 등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퇴직적립금 및 인건비·

사회보험료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운영비 집행잔액 규모 및 발생 사유

- 2025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의 총 교부액은 4,386,891천원, 집행액은 4,089,902천원으로, 총 296,98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체 교부액 대비 약 6.8%의 잔액률을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시비는 2,888,124천원이 교부되어 2,695,081천원이 집행되었고, 구비는 1,498,767천원이 교부되어 1,394,821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구비 집행잔액은 103,946천원으로 구비 교부액 대비 약 6.9%수준임.

202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예산집행현황(시·구 매칭예산)					
(단위: 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보조금 반환금 총액(국+시)
계	4,386,891,000	4,089,902,212	296,988,788	816,897	193,587,471
시비	2,888,124,000	2,695,081,288	193,042,712	544,759	193,587,471
구비	1,498,767,000	1,394,820,924	103,946,076	272,138	0

-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자체의 미추진에 따른 불용이라기보다는 연도 중 발생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차액, 종사자의 중도 퇴직 등에 따른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다만, 전체적인 집행잔액률이 약 6.8%인 가운데 복지관별 집행잔액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단순히 정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액으로만 보기보다는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산정·집행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예산집행현황(시·구 매칭예산)

(단위: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합계	시비	구비	합계	시비	구비	합계	시비	구비	합계	시비	구비
합계	438,691,000	288,124,000	1,48,767,000	408,902,212	2,695,081,288	1,394,820,924	296,988,788	193,042,712	103,946,076	816,897	544,759	272,138
한우리 정보 문화센터	283,023,000	161,088,000	82,193,000	239,179,812	1,584,034,928	807,764,884	412,231,88	26,795,072	14,428,116	400,108	273,846	126,262
사랑의 복지관	155,668,000	127,036,000	66,574,000	169,722,400	1,111,046,360	587,056,040	257,656,000	166,247,640	89,517,960	416,789	270,913	145,876

- 위와 같이 복지관별로 보면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구비 집행잔액은 14,428천원으로 구비 교부액의 약 1.8%에 그치는 반면, 사랑의복지관은 89,518천원으로 구비 교부액의 약 13.2%에 이르고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사랑의복지관의 경우 구비 집행잔액이 전체 구비 집행잔액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사업의 잔액률이 약 6.9%라는 수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복지관별 집행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랑의복지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종사자 인건비의 미집행, 채용·퇴직에 따른 인건비 변동, 사업비 미집행 또는 기타 운영비 절감 등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일회적인 정산 요인인지 아니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잔액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과,
- 아울러 금번 세입 편성액 중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및

휴직자 인건비·사회보험료 정산액은 사업 수행 이후 실제 발생한 변동 사항을 반영한 정산금이라는 점에서 그 발생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정산자료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의 산정 규모가 실제 집행수요에 보다 부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세입 편성의 적정성

- 금번 추경에 편성된 107,161천원은 2025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에 대한 정산 결과 확정된 사용잔액과 각종 정산 반환금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 반환이 확정된 금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한다는 점에서 세입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특히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반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만큼 기정액이 0원으로 편성된 것은 사후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잔액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금번 추경에서 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예산의 세입·세출 구조를 실제 재정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체 교부액 대비 약 6.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구비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특정 복지관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복지관별 집행실적과 잔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교부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금번 추정 세입은 전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의 정산 결과에 따라 확정된 구비 집행잔액과 퇴직적립금·인건비·사회보험료 등의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사후 정산에 따른 실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편성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운영비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약 6.8% 수준에 이르고 복지관별 잔액 규모에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는 만큼, 단순한 정산금의 세입 편성에 그치지 않고 잔액 발생 원인을 복지관별로 분석하여 향후 운영비 산정 및 교부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면서도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국고보조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30,743,984	29,377,092	1,366,892

○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의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구성되어 있고,

- 이번 추경에서는 생계급여 987,600천원, 주거급여 379,292천원 등 총 1,366,892천원을 증액하여 당초 29,377,092천원에서 30,743,984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약 4.7% 증가한 규모임.

○ 지원기준 및 급여별 세부내용

- 집행부 회신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가구원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2026년 기초생계·주거급여 지원 기준						
(단위: 원)						
사업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주거급여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 위 기준에 따라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생계급여는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현금급여이고,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라는 점에서 각각의 지원 목적과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 따라서 이번 추경 증액은 단순한 사업 확대라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변동 및 급여기준에 따른 소요재원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급여별 추경 증액 규모 및 사유

- 집행부가 제출한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30,743,984천원 중 생계급여가 18,220,908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급여가 12,452,726천원, 해산·장제급여가 70,35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국고보조금) 세부내역표			
(단위: 원)			
	2026년 본예산	2026년 추경예산	증감액
합 계	29,377,092,000	30,743,984,000	1,366,892,000
생계급여	17,233,308,000	18,220,908,000	987,600,000
주거급여	12,073,434,000	12,452,726,000	379,292,000
해산장제급여	70,350,000	70,350,000	-

-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가 전체 증액분의 약 72.3%인 987,600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급여가 379,292천원으로 약 27.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해산·장제급여는 증액 없이 당초 예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본예산 17,233,308천원에서 18,220,908천원으로 987,600천원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역시 12,073,434천원에서 12,452,726천원으로 379,29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추경의 증액분은 생계 및 주거급여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증액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급여 지급대상자의 변동, 급여기준에 따른 실제 소요액 증가 등으로 추가적인 국고보조금이 교부 또는 내시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국·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 또한 연동하여 조정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수급자 증가 규모와 급여별 집행실적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개년도 예산 추이

- 최근 3개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국고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2024년 25,291,718천원에서 2025년 27,589,041천원으로 2,297,323천원(약 9.1%) 증가하였고, 2026년 본예산은 29,377,092천원으로 전년 대비 1,788,051천원(약 6.5%) 증가하였으며,
- 또한 2026년 추경예산은 30,743,984천원으로 조정되어 2025년 예산 대비 3,154,943천원(약 11.4%) 증가하였으며, 2024년과 비교하면 약 54억 5,227만원 증가한 규모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국고보조금) 3개년도 현황표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2024년	25,291,718,000	25,291,718,000	-
2025년	27,589,041,000	27,589,041,000	-
2026년	29,377,092,000	30,743,984,000	△1,366,892,000

- 이와 같이 최근 3개년 예산이 25,291,718천원 → 27,589,041천원 → 29,377,092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추경을 통해 다시 30,743,984천원까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 다만, 동 사업은 법정·의무적 성격이 강한 복지급여로서 대상자 및 급여기준의 변동에 따라 소요재원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예산 증가 여부만으로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최근 수급자 수 및 급여별 실제 집행액, 가구 유형별 수급현황, 본예산 편성 당시 추계액과 실제 소요액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특히 2026년 추경 증액분 1,366,892천원 가운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전액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각 급여별 수급자 증가가 주요 원인인지, 급여기준 및 보장수준의 변동에 따른 것인지, 또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추계가 실제 집행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의무적 성격의 복지사업으로서, 수급자 및 급여기준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추경 역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추가 소요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 또한 2026년 지원기준에 따른 가구원별 급여기준과 급여별 세부 증액내역, 최근 3개년 예산 추이를 종합하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다만, 최근 3년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

도 본예산 대비 1,366,892천원이 추가 증액되는 만큼, 향후에도 수급자 증가 및 급여기준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도별 수급자 추이와 급여별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수요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집행실적 관리와 소요액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시도비보조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4,347,192	13,709,309	637,883

○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시도비보조금)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주거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를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실제 소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도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임.
- 금번 추경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증액액 637,883천원 중 생계급여가 460,880천원, 주거급여가 177,003천원 증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시도비보조금) 세부내역표

(단위: 원)

	2026년 본예산	2026년 추경예산	증감액
합 계	13,709,309,000	14,347,192,000	637,883,000

생계급여	8,042,210,000	8,503,090,000	460,880,000
주거급여	5,634,269,000	5,811,272,000	177,003,000
해산장제급여	32,830,000	32,830,000	-

- 세부적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증액 규모는 확인되나, 각 급여별 증액이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것인지, 급여단가 또는 보장수준의 변경에 따른 것인지, 또는 당초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집행수요 간 차이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가구원 변동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보장수준 등의 변경에 따라 소요예산이 변동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금번 변경내시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급여별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최근 3개년 예산 추이 및 증액 적정성

- 최근 3개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1,802,802천원, 2025년 12,874,885천원, 2026년 본예산 13,709,309천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637,883천원이 추가 증액되어 14,347,192천원 규모로 조정되는 것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시도비보조금) 3개년도 현황표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2024년	11,802,802,000	11,802,802,000	-
2025년	12,874,885,000	12,874,885,000	-
2026년	13,709,309,000	14,347,192,000	△637,883,000

- 이에 따라 2026년 추경예산은 2024년 대비 2,544,390천원(21.6%), 2025년 대비 1,472,307천원(11.4%)증가한 규모로,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637,883천원을 추가 증액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수급자 수 및 급여 지급실적의 변동, 급여단가 및 선정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당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최근 집행실적과 수급자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의무적 성격의 복지급여로서, 실제 수급대상자 및 급여 소요액이 증가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경우 이에 따른 구비 부담 및 재원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금번 추경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소요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도비 보조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법정 복지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편성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최근 3개년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상당 규모의 추가 증액이 이루어지는 만큼, 금번 증액의 구체적인 발생요인을 급여별 수급자·수급가구 변동, 급여단가 및 보장수준의 변경 여부, 최근 집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091,670	0	1,091,670

○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세입 편성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의 기본급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가적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번 추경은 2025년도 시비 100%로 추진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예탁금 이자를 정산하여 반환받는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사업비의 사후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을 반영하는 것임.
- 집행부가 제출한 세부내역에 따르면, 2025년 사업비 3,234,159천원 전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였으나, 실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지급된 비용은 2,157,916천원으로, 예
 탁금 중 1,076,242천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예탁금 운
 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 15,428,900원을 합산하여 총 1,091,670,96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천원 단위로 예산에 1,091,670천원을 편성한 것임.

세부내역 현황표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예탁금)	정산액 (비용지급액)	사용잔액 (환급액)	이자반납액
시비(100%)	3,234,159,000	3,234,159,000	2,157,916,940	1,076,242,060	15,428,900

- 이는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일괄 예탁한 후 실제 서비스 이
 용량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미사
 용 예탁금과 발생이자를 정산·환급하는 사업 집행방식에 따른 것으로,
 사용잔액 자체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정산금이라는 점
 에서 금번 세입 편성의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정액이 0천원인 것은 전년도 사업비의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
 이 당초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업 종료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정산을 거쳐 실제 반환액이 확정된 후 금번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는 구조인 만큼, 기정액이 없는 것 자체는 예
 산 편성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개년 정산 현황 및 잔액 발생 규모

- 최근 3개년 사업비 정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최근 3개년도 세부내역 비교 현황표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예탁금)	정산액 (비용지급액)	사용잔액 (환급액)	이자반납액
2023년	2,879,258,000	2,879,258,000	1,638,246,420	1,241,011,580	27,336,800
2024년	2,109,801,000	2,109,801,000	1,944,936,140	164,864,860	13,936,930
2025년	3,234,159,000	3,234,159,000	2,157,916,940	1,076,242,060	15,428,900

- 위와 같이 최근 3개년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잔액은 2023년 1,241,012천원, 2024년 164,865천원, 2025년 1,076,242천원으로 연도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5년에는 예산현액 3,234,159천원 중 실제 서비스 비용 지급액이 2,157,917천원에 그쳐 약 33.3%가 사용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사용잔액과 이자를 합한 반환액은 약 10억 9,167만원에 이르고 있고,
- 반면 2024년에는 사용잔액이 약 1억 6,48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8%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사용잔액이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 특히 단순히 실제 이용자 수 또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것인지, 대상자별 추가 급여 이용률이 낮았던 것인지, 사업기간 중 대상자 변동 또는 서비스 미이용 등에 따른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 이는 앞서 검토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사용잔액과 마찬가지로, 추가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예탁한 사업비가 실제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집행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산잔액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시비추가지원사업의 경우 2025년 사용잔액 규모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이용실적을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특히 최근 3개년간 사용잔액 규모가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대상자별 이용률, 월별 서비스 이용량 등을 분석하여 적정 예탁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을 사전에 예탁한 후 상당액을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 한편, 이자반납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된 사업비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정산하여 반환받는 것으로, 2023년 27,337천원, 2024년 13,937천원, 2025년 15,42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예탁기간 및 적용금리 등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 금번 추경의 1,091,670천원은 2025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의 실제 집행 후 발생한 사용잔액 1,076,242천원과 이자 15,429천원을 정산·반환받는 세입으로서, 사업 종료 후 확정된 반환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세입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아울러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라 실제 반환액이 확정된 이후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 특성상 기정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다만, 2025년 사용잔액이 전체 사업비의 약 33.3%에 달하고 최근 3개년간 잔액 규모도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번

반환금의 세입 편성은 적정하나, 향후에는 실제 이용자 수와 서비스 이용량 및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비 예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193,587	0	193,587

○ 전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반환금 편성

-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에서는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사랑의복지관을 대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금번 추경은 2025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금의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결과 발생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93,042,712원과 이에 따른 이자 544,759원 등 총 193,587,471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을 반영하는 것임.
- 아울러 기정액이 0천원인 것은 2025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

비에 대한 정산이 회계연도 종료 후 이루어지고 2026년 초에 반환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11월경 이루어진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확한 반환금액을 사전에 산정을 할 수가 없는 사정으로, 정산 완료 후 확정된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금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시기와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시·구비 매칭예산 집행 및 반환금 내역

-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예산집행현황(시·구비 매칭예산)」을 보면, 2025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은 총 4,386,891천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중 4,089,902천원이 집행되어 296,989천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817천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아래와 같고,

최근 3개년도 세부내역 비교 현황표					
(단위: 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보조금 반환금 총액(국+시)
계	4,386,891,000	4,089,902,212	296,988,788	816,897	193,587,471
시비	2,888,124,000	2,695,081,288	193,042,712	544,759	193,587,471
구비	1,498,767,000	1,394,820,924	103,946,076	272,138	0

- 재원별로는 시비가 2,888,124천원교부되어 2,695,081천원을 집행하고 193,043천원의 집행잔액과 545천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구비는 1,498,767천원교부되어 1,394,821천원을 집행하고 103,946천원의 집행잔액과 272천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따라서 시비 집행잔액 193,042,712원과 시비 발생이자 544,759원을 합산한 193,587,471원이 금번 추경의 세입 편성액과 일치하고

있어, 반환금액의 산출 및 세입 편성에는 특별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전체 집행잔액 가운데 시비분이 193,042,712원으로 약 6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구비 매칭비율이 시비 6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관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

-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집행잔액(복지관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총 교부액 2,433,023천원2,391,800천원을 집행하여 41,223천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400천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시비 집행잔액은 26,795천원, 시비 이자는 274천원이고,
- 사랑의복지관은 총 교부액 1,953,868천원1,698,102천원을 집행하여 255,766천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417천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시비 집행잔액은 166,248천원, 시비 이자는 271천원으로, 이를 종합하면 시비 집행잔액 193,043천원중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약 26,795천원, 사랑의복지관이 약 166,248천원으로, 사랑의복지관에서 발생한 시비 집행잔액이 전체 시비 잔액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관별 잔액 발생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집행잔액(복지관별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합계	시비	구비	합계	시비	구비	합계	시비	구비	합계	시비	구비
합계	4,368,910,000	2,888,124,000	1,480,786,000	4,089,902,212	2,695,081,288	1,394,820,924	28,988,788	193,042,712	108,946,076	816,897	544,759	272,138
한우리정보문화센터	2,433,023,000	1,610,880,000	822,143,000	2,391,799,812	1,584,034,928	807,764,884	412,388	26,795,072	144,816	400,108	273,846	126,262
사랑의복지관	1,953,868,000	1,277,244,000	676,544,000	1,698,102,400	1,111,046,360	587,056,040	25,756,000	166,248,640	89,130	416,789	270,913	145,876

- 집행부는 이러한 사용잔액 발생 사유로 복지관 종사자의 이직·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시책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금번 반환금은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발생한 임의적인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인건비의 특성상 종사자의 이직·충원 시점에 따라 실제 집행액이 달라지고, 복지포인트 및 시책사업비 등의 집행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잔액이라는 점에서 반환금 발생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다만, 사랑의복지관에서 발생한 시비 집행잔액이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비해 현저히 큰 만큼, 향후에는 복지관별 인력운영 현황 및 인건비 집행실적 등을 기초로 보조금 교부 및 예산 편성 규모를 보다 정교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개년 시비 집행 추이

- 집행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조금(시비) 최근 3개년도 세부내역 비교 현황표」를 살펴보면, 시비 예산현액은 2023년 3,092,079천원, 2024년 3,006,769천원, 2025년 2,888,124천원으로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산 집행잔액은 2023년 168,784천원, 2024년 202,984천원, 2025년 193,043천원으로 연도별로 일정한 규모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각각 약 5.5%, 6.8%, 6.7%수준으로 나타남.

최근 3개년도 세부내역 비교 현황표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정산 집행잔액	발생이자
2023년	3,092,079,000	2,923,294,754	168,784,246	684,019
2024년	3,006,769,000	2,803,785,082	202,983,918	509,205
2025년	2,888,124,000	2,695,081,288	193,042,712	544,759

- 위와 같이 최근 3개년간 시비 예산현액 자체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1억 7천만원에서 2억원 내외의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집행잔액이 193,04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6.7%에 해당하여, 단 년도에 우연히 발생한 잔액이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금의 특성 상 일정 규모의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앞서 검토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용잔액(구비분)과 마찬가지로, 금번 시비분 반환금의 세입 편성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전년도 복지관별 집행실적과 인건비 집행률, 종사자 변동 현황 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교부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금번 추경에 편성한 193,587천원은 2025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금 중 시비 집행잔액 193,043천원과 발생이자 545천원을 정산하

여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한 세입으로, 사업 종료 후 확정된 반환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세입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시·구비 매칭예산 집행현황과 복지관별 세부현황을 통해 시비 반환금의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한우리정보문화센터와 사랑의복지관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내역도 금번 세입 편성액과 일치하고 있어 반환금액의 산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 다만, 최근 3개년간 시비 보조금에서 매년 약 6% 내외의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25년에는 사랑의복지관에서 발생한 잔액이 시비 전체 집행잔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복지관별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집행수요에 부합하는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고,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여성보육과】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용잔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용잔액	200,487	0	200,487

○ 사업내용 및 세입 편성 사유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343가정에 대하여 시간제 340가정, 종일제 3가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는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 960시간 한도로 지원하며, 종일제는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2025년도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2,238,435천원, 지출액은 1,866,102천원으로 372,33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국비 이자 4,333천원을 포함하면 총 376,666천원의 반환대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집행잔액 발생 및 기정액 미편성 사유의 적정성

- 집행부는 기정액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예산 수립 당시에는 집행잔액 발생 여부 및 반환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전년도 사업의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반환금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구조상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정산이 시스템상 당해연도 4월에 확정되는 만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해 보임
- 다만 최근 3개년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 299,070천원, 2024년 808,106천원, 2025년 372,333천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특히 2024년에는 집행잔액이 8억원을 상회하는 등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반환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은 정부에서 출생률, 인구증감 등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 가내시를 통보해주고 매칭비율에 따라 국·시·구비를 편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가정을 지원하였으며 서초구 특성상 정부 기준 초과로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유형 ‘라’형에 해당하는 가정이 141가정으로 전체 348가정 중 4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함.
- 2025년에는 당초 예산액 2,238,435천원 중 집행잔액이 372,333천원으로 약 16.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150%에서 200%로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집행잔액이 2024년 대비 줄어들었으나, 전체 이용가정 중 중위소득 200%를 초과한 정부지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함.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가형 10~25%, 나형 40%, 다형 20~30%, 라형 10~15%)이 상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됨.
- 특히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가정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 여부 및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지원기준이 변동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정부에서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지정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임

○ 최근 3개년 집행실적 및 향후 관리 필요성

최근 3개년도 세부내역(구비 및 국비)			
(단위: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1,481,962	2,299,986	2,238,435
지출액	1,182,892	1,491,880	1,866,102
집행잔액	299,070	808,106	372,333
국비이자	20,564	12,656	4,333
집행잔액률	20.2%	35.1%	16.6%

- 위와 같은 최근 3개년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는 2023년 1,481,962천원에서 2024년 2,299,986천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 2025년 2,238,435천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은 299,070천원, 808,106천원, 372,333천원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고,
- 특히 2024년에는 집행잔액률이 약 35.1%에 달하였고, 2025년에도 약 16.6%의 잔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반환금의 세입 편성 자체는 정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부 수요예측 시 우리구 수요 적정성 및 실제 수요에 대한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매년 지원기준, 소득 구간별 이용현황이 변동이 됨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려워 보임.

○ 이를 종합하면,

- 이번 세입예산은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및 국비이자를 반환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반환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기정액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최근 3개년 동안 매년 상당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2025년에도 3억 7천만원 상당의 잔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정산에 따른 세입 편성에 그치기보다는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재원별·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향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운영 시 정부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에는 소득기준별 이용현황과 지원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불용 및 반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사용잔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사용잔액	360,148	0	360,148

○ 사업내용 및 세입 편성 사유

-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및 손주돌보미를 양성·운영하고 119아이돌보미를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

년에는 총 1,413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서초 아이돌보미 377가정, 손주돌보미 931가정, 119아이돌보미 145가정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이번 세입예산 360,148천원은 2025년도 사업비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전액 구비로 구성되어 있고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나타남.
- 집행부는 기정액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예산 수립 당시에는 집행잔액 발생 여부 및 반환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전년도 사업의 결산 및 정산이 완료된 후 반환금액이 확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세부내역

- 집행부가 제출한 “세부내역 및 사유”에 따르면, 이번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감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감소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이용자·아이돌보미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초아이돌보미 이용가정	459	356	337
서초아이돌보미 활동자 수	113	91	87

- 세부적으로 서초 아이돌보미는 이용가정이 2023년 459가정에서 2024년 356가정, 2025년 337가정으로 감소하였고, 아이돌보미 역시 2023년 113명에서 2024년 91명, 2025년 8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수요 및 아이돌보미 감소가 실제 사업비 집행 감소 및 집행잔액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 특히 서초 아이돌보미 2023년 대비 2025년 이용가정이 122가정 감소하여 약 26.6% 감소하였고, 아이돌보미도 26명 감소하여 약 23% 감소하는 등 이용수요 및 아이돌보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이용가정 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신규 지원자 감소에 따른 실적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개년 집행실적 검토

최근 3개년 집행실적			
(단위: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4,163,535	4,413,135	4,365,715
지출액	3,834,423	3,140,816	4,005,567
집행잔액	329,112	1,272,319	360,148
집행잔액률	7.9%	28.8%	8.2%

- 최근 3개년 예산액은 2023년 4,163,535천원에서 2024년 4,413,135천원, 2025년 4,365,715천원으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출액은 2023년 3,834,423천원에서 2024년 3,140,816천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5년 4,005,567천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연도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2023년 329,112천원에서 2024년 1,272,319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예산액의 28.8%에 달하였으나, 2025년에는 거주기간 요건 삭제 및 지원기간 확대 등 손주돌보미 지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360,148천원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 다만 집행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 이용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별 이용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119아이돌보미 지원 확대에 따른 향후 관리

- 한편 2026년부터 119아이돌보미의 지원횟수를 기존 6회에서 8회로 확대 운영 중으로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향후 집행액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따라서 최근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감소 추세만을 근거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기보다는, 지원횟수 확대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 가능성과 실제 긴급돌봄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횟수 확대가 실제 이용률 및 집행을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 이번 세입예산은 2025년도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360,148천원을 반환수입으로 세입에 편성하는 것으로, 결산 및 정산 이후 반환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의 특성상 기정액이 없는 사유와 세입 편성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전년 대비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감소가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라면, 최근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 채용 감소 추세와 함께 사업별 예산편성 규모 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초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수요 및 아이돌보미 감소와 지원 범위 확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 아울러 2024년에 12억 7,232만원의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과 2025년에도 3억 6,0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사업별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수뿐만 아니라 지원 시간 및 실제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의 불용 및 반환 규모를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돌봄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초구립 우면동 초등키움센터 임차보증금 반환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서초구립 우면동 초등키움센터 임차보증금 반환금	100,000	0	100,000

○ 사업내용 및 세입 편성 사유

- 서초구립 우면동 초등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기존 임차시설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우면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기납부한 임차보증금 100,000천원을 반환받아 세외수입으로 세입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환금 전액은 구비에 해당함.

- 기존 임대차계약은 2019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유지되는 계약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우면 열린문화센터로의 이전에 따라 기존 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임차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2026년 3월 31일 임차보증금 100,000천원을 실제 반환받음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기정액 미편성 사유의 적정성

- 집행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이 2026년 3월 14일까지 유지되고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약 종료 및 시설 원상복구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31일 반환받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시설의 원상복구 등 반환조건이 충족된 후 실제 반환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는 성격의 세입이라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 당시 반환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번 세입예산은 향후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임의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이 아니라, 2026년 3월 31일 임대인으로부터 실제 100,000천원을 반환받은 후 그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세입 발생의 원인과 금액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세입 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됨.

○ 임차보증금 반환 및 시설 이전의 적정성

- 기존 센터는 우면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하면서 운영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임차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공사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차보증금은 당초 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한 자산적 성격의 금액으로서, 계약 종료에 따라 이를 반환받는 경우 별도의 사업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출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수입과는 성격이 달라 시설 원상복구 등에 따른 공제액이나 미정산금액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반환금 전액이 적정하게 세입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건은 서초구립 우면동 초등체육센터가 우면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기납부한 임차보증금 100,000천원을 반환받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이라는 세입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실제 반환금액도 확정된 만큼 추정 세입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 또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정액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 종료 후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시점에 추경으로 반영한 것은 세입 발생 시점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됨.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용잔액**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용잔액	205,750	0	205,750

○ **사업내용 및 세입 편성 사유**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만 3~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비 100% 보조사업임.
-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영유아이며, 지원금액은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천원, 4~5세 보육료 추가지원 월 50천원, 5세 무상보육비 월 70천원으로 구성되고, 누리과정 보육료 등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교부금을 매월 예탁하여 지원하고 5세 무상보육비는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이번 세입예산 205,750천원은 2025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금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사용잔액을 반환받는 것으로, 전액 시비로 구성된 세입이며, 집행부가 제출한 세부 정산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누리보육료 환급액 205,750천원을 실제 수납한 것으로 나타남.

보육료 사용잔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현액 (나)	징수결정액 (다)	실제수납액 (라)	차액 (라-나)
2025년 누리보육료 환급액	0	0	205,750	205,750	205,750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액과 예산현액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205,750천원이 2025년도 누리보육료 예탁금의 정산 과정에서 환급액으로 확정되어 실제 수납된 것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액이 확정되는 사용잔액의 특성상 본예산에 기정액을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집행내역 및 사용잔액 발생 검토

-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집행내역표를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추가 지원 포함)는 예산현액 10,288,254천원 중 9,067,393천원을 교부하고 9,062,45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탁금 정산액으로 205,75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5세 무상보육비는 예산현액 및 교부액 277,300천원 중 268,080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보육료 사용잔액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예탁금 정산액	비고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 포함)	10,288,254	9,067,393	9,062,455	205,750	예탁 지원
5세 무상보육비	277,300	277,300	268,080	-	직접 지원
합 계	10,565,554	9,344,693	9,330,535	205,750	

- 이에 따르면 이번 세입으로 편성하는 205,750천원은 어린이집 등에 직접 지급한 5세 무상보육비의 집행잔액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운영한 누리과정 보육료의 연말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액으로 파악됨.
- 다만 제출자료상 누리과정 보육료의 교부액 9,067,393천원과 집행액 9,062,454천원의 차이는 4,939천원인 반면, 예탁금 정산액은 205,750천원으로 제시되어 있어 교부액 집행액 예탁금 정산액 간 금액관계가 단순 산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205,750천원이 2025년도 예탁금 정산 결과에 따른 최종 반환액이라는 점과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교부액 및 집행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정산 구조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3개년 집행현황 검토

- 아울러 집행부가 제출한 최근 3개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023년 10,395,397천원, 2024년 10,288,254천원, 2025년 10,565,554천원으로 큰 변동 없이 약 103억~106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집행액은 8,647,178천원, 8,703,844천원, 9,330,535천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집행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평균
예산현액	10,395,397	10,288,254	10,565,554	10,416,402
집행액 (집행률)	8,647,178 (83%)	8,703,844 (84%)	9,330,535 (88%)	8,893,852 (85%)
집행잔액	1,748,219	1,584,410	1,235,018	1,522,550

- 집행률은 2023년 83%에서 2024년 84%, 2025년 88%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2023년 1,748,219천원에서 2024년 1,584,410천원, 2025년 1,235,018천원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업비의 실제 집행수준은 최근 개선되는 추세로 보이고,
- 다만 2025년에도 예산현액 10,565,554천원 중 1,235,01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약 11.7%의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와 실제 보육료 지원수요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특히 이번 세입으로 편성하는 205,750천원은 전체 2025년 집행잔액 1,235,018천원의 약 16.7%에 해당하는 규모인바, 전체 집행잔액 중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금 정산에 따른 반환액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떤 사유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 다만 누리과정 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와 연령별 지원대상, 월별 재원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후 실제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정 규모의 정산잔액 발생 자체를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세입 편성 및 향후 관리의 적정성

- 이번 205,750천원의 세입은 2025년도 사업의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환급액이 확정된 후 반환받은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므로, 당초 예

산편성 단계에서 반환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기정액이 없었던 것은 사업의 정산 구조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최근 3년간 집행률이 83%, 84%, 88%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매년 12억~17억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전년도 실제 집행실적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연령별 지원대상 변동 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탁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정산에 따른 반환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 본 건은 2025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금의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205,750천원의 환급액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정산 이후 반환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의 특성상 당초 본예산에 기정액을 편성하지 않고 실제 환급액이 확정된 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3개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83%에서 88%로 개선되고 집행잔액도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비 집행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25년에도 12억 3,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 실제 보육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예탁금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고,
- 아울러 집행부가 제출한 집행내역표상 교부액·집행액·예탁금 정산액 간 금액관계가 단순 산술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세입으로 편성하는 205,750천원이 최종 정산 결과에 따른 정확한 반환액인지 그 산출근거와 정산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예탁금 편성 및 정산관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세 출 분 야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재난·안전활동비) - 18,240천원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8,240천원이 추경 요구액으로 제출되었음.
- 이는,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범위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구 안전도시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이 2025.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2026.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12개월로 산출된 것으로 보임.

○ 기관공통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 - 1,510,098천원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수, 기타직보수 등으로 1,496,956천원과 「공무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연금부담금등”으로 13,142천원이 추경 요구액으로 제출되었음.
- 보수(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및 기타직보수 주요 증액 사유는 휴직자 증가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임기제 신규 채용

에 따른 것으로 기존 113명에서 144명으로 3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임.

※ 휴직 현황

구 분	2026. 8월 현재	2025년	2024년	2023년	비 고
계	250명	222명	198명	204명	
육아휴직	145명	121명	111명	116명	
요양휴직	60명	53명	49명	48명	
가족돌봄휴직	29명	36명	26명	30명	
기 타	16명	12명	12명	10명	

【문화관광과】

○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 - 70,000천원

- 2009. 3월 개원한 서초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보급 및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의 문화예술적 재능 및 정서 교양의 증진을 목적으로 양재천 벚꽃 등축제, 클래식판타지, 서초 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서초문화버스는 문화원과 공공문화시설을 연계하여 관내 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초문화버스를 운영(25인승 버스 5대 / 1호차~5호차) 중에 있으나, 2026년도 본예산 510,000천원 편성 후 중동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 등 불가피한 추가 부담 발생으로 70,000천원의 추경 요구액이 제출되었고, 관련 예산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이 월평균 약 48,000천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소

요예산은 약 192,000천원이 필요하나 8월 말 집행잔액은 125,373천원으로 부족액 70,000천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임.

※ 민간경상사업보조(문화시설이용편의지원) 예산 현황 (2026.8.31. 기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510,000천원	384,627천원	125,373천원	월 평균 지출액 48,078천원

※ 연도별 서초문화버스 운영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간	'18.3.15 ~ 12.31 (9개월)	'19.1.1 ~12.31 (12개월)	'20.1.2. ~ 2.23. (2개월)	미운영	'22.9. ~12.3. (3개월)	'23. 2. ~ 12. (11개월)	'24. 1. ~ 12 (12개월)	'25. 1. ~ 12 (12개월)
노선(버스)	6개(6대)	7개(7대)	7개(7대)		7개(7대)	5개(5대)	5개(5대)	5개(5대)
이용자	14,200명	38,336명	4,157명		1일 210명	1일 108명	1일 197명	1일 316명

- 코로나19 확산 및 공공시설 폐쇄에 따른 문화버스 운영중단(2020.2.24.) 및 계약 해지(2020.7.31.)
- 2022년 7호차 → 2023년 5호차 운영 변경(이용률이 저조한 2개 노선 축소 개편)

【자치행정과】

○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 55,986천원

- 법률기관 협력 및 법률문화 콘텐츠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조인의 학술·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법률문화 교류의 중심지 조성을 위해 2023년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연구용역 개최 등으로 본격적인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추진해 왔음.

※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주요 추진실적

연도	추진실적
2023	○ 아·태 사법정의 허브 특화공간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 회의 및 학술연구용역 추진
·	○ 사법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사법견학프로그램, 학술대회 개최, 향나무 공모전
2024	○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호사회 등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2025	○ 아·태 사법정의 허브 특화공간 조성 - 천년향 상징 공간 조성 및 사법정의 허브 서초역 라운지 개관·운영, 법조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사법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사법견학프로그램, 생활법률강좌, 생활세무상담 등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 협업 추진
2026	○ 사법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사법견학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신규운영, 걷기 앱 활용 체험방문 프로그램 '사법정의 허브 미션챌린지' 운영 ○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 법률신문 업무협약,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서초구청장 면담 등

- 관련하여 2023. 12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650,000천원(시설비 542,000천원, 사무관리비 108,000천원)을 교부받고, 천년향 상징공간 조성, “서초역 라운지” 개관, 법조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아·태 사법정의 허브 특화공간 조성으로 시설비 542,000천원 및 사무관리비 52,014천원을 집행하였고,
-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5,986천원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집행잔액 사용승인 얻어 사법정의 허브 주요 공간 조성 완료에 따라 공간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각 안내체계 집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비 과목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라 할 것임.

【체육진흥과】

○ 서초구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 1,217,000천원

-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지동 소재 신규 파크골프장(면적 9,100㎡ / 9홀)을 조성하고자 1,217,000천원이 추경 요구액으로 제출되었음.
- 이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관련 매칭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2026. 3월 1,217,000천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구 매칭비율(50%)에 따라 편성요구 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434,000천원으로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조성 공사비		2,146,242	88.2	
용역비	설계비	80,302	3.3	
	감리비	207,327	8.5	

- 한편, 사업비 1,006,300천원 전액 우리구 예산이 투입된 청계산 수변공원 파크골프장(신원동 310-5 / 4,806㎡ / 9홀)의 경우 2025. 7월 개장·운영 중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용률 및 이용인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계산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이용인원 및 사용료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이용인원	사용료 수입	비고
2026	17,200명	37,000천원	2026.7 기준
2025	13,000명	23,000천원	2025.7~8월 무료 시범운영

- 이용률(실 이용자수/최대 이용가능자수) : 97.1%

○ 서초구체육회장 선거관리 비용 지원 - 30,000천원

- 서초구체육회 회장의 임기가 2027.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26. 12. 23. 실시되는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1)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2)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

1)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⑥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2) 제3조(보조금 지원) ①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

리 추진을 위해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비용 30,000천원의 추정 요구액이 제출되었음.

- 체육회장 선거는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동시선거로 2026. 12. 23. 실시되고, 선거 위탁비용 30,000천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위원수당 및 여비 등 12,000천원, 선거벽보 등 선거운동 관리 2,000천원, 투표 및 개표관리 10,000천원, 계도 홍보 및 예방 단속 등 6,000천원으로 서초구 체육회에 지원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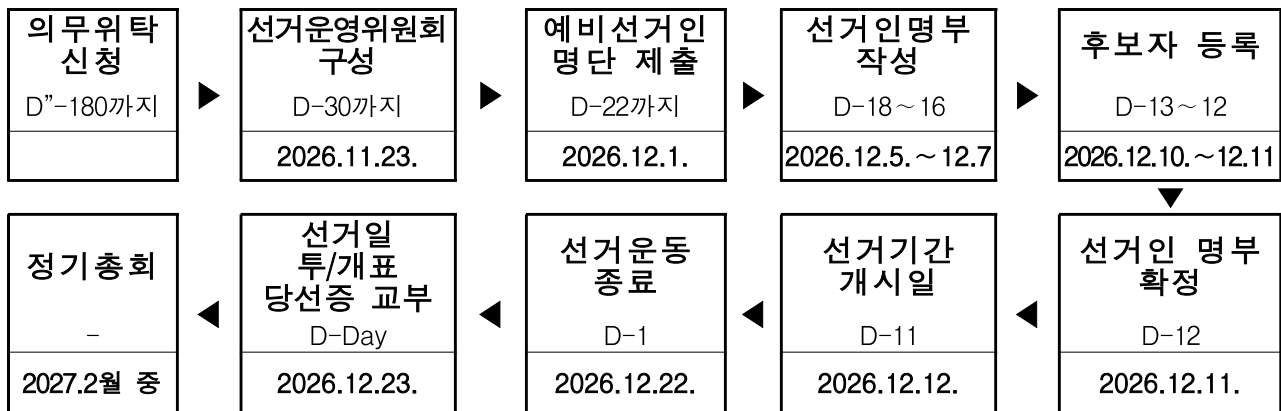
※ 서초구체육회 주요 현황

[’26. 8월 기준]

구 분	내 용
연 혁	▪ 2016. 05. 12. 서초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 2020. 01. 13. 민선1기 서초구체육회장 선거일(이종환 회장 당선) ▪ 2021. 05. 03. 서초구체육회 법인화 ▪ 2022. 12. 22. 민선2기 서초구체육회장 선거일(이종환 회장 당선) ▪ 2026. 12. 23. 민선3기 서초구체육회장 선거일
임원현황	총44명(회장1, 수석부회장1, 부회장10, 이사28, 감사2, 사무국장1, 고문1)
조직현황	1 사무국, 40개 종목 단체, 직원 15명(사무국장 1, 지도자 13, 행정직원 1)
사 무 실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6, 1~2층
주요사업	▪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체력증진, 구민 위한 체육행사 지원 ☞ 새해 해맞이, 구민체육대회 ▪ 종목별 정기대항전 개최 지원, 종목별 구 대표출전 참가지원 ▪ 맞춤형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학교밖 스포츠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여성 축구(풋살) 등 ▪ 체육지도자 관내 복지관, 학교 등 생활체육 무료 지도

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 절차



밝은미래국

【일자리경제과】

□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	1,001,400	501,400	500,000

○ 지속적인 사업수요와 추진실적

- 본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초구와 시중은행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특별신용보증을 공급하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서초구 5억원, 시중은행 25억원 등 총 30억원을 출연하여 375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6. 8. 13. 기준 570개 업체에 총 283억 2천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전체 보증공급 규모의

약 75.5%가 소진된 상황임.

- 또한 최근 사업실적을 보면 2024년 1,091개 업체에 약 438억 8천만원, 2025년 1,424개 업체에 약 578억 6천만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수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본 사업은 2021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과거 출연실적과 지원규모 등을 통해 향후 재정소요를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계속사업이라는 점에서, 연도별 출연규모를 편성할 때 과거 사업실적과 예상되는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초스피드대출 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 현황	합 계	19,700	3,600	3,000	3,700	3,100	3,300	3,000
	서 초 구	9,400	2,900	2,000	2,000	1,000	1,000	500
	시중은행	10,300	700	1,000	1,700	2,100	2,300	2,500
지원 현황	업 체 수	7,226	1,948	1,084	1,109	1,091	1,424	570
	지원금액	255,467	41,000	35,765	48,645	43,877	57,860	28,320

- 추진실적('26.8.13.기준) : 총 570개소 / 283억원 대출 실행
- 대출 가능 규모 375억원 중 283억원 소진(약 75.5% 재원 집행)

○ 본예산 감액 편성 후 추경 증액의 적정성

- 서초구는 최근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0억원의 출연금을 본예산

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26년도에는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5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2026년도 서초구 출연금은 결과적으로 다시 10억원 수준으로 회복되는 구조라 할 것이고, 최근 3개년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근 3개년 예산 현황 비교

(단위 : 억원)				
연도	출연금액	상세내역	보증한도	지출액 (출연금)
2024	31억원	구 10억원 은행 21억원(신한 10,우리 5, 하나 3, 국민 3)	387.5억원	10억원
2025	33억원	구 10억원 은행 23억원(신한 10,우리 4, 하나 6, 국민 3)	412.5억원	10억원
2026	30억원	구 5억원 은행 25억원(신한 10,우리 4, 하나 6, 국민 3, 새마을금고 2)	375억원	5억원

-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면 추경을 통한 추가 재원 편성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어 온 계속사업이고 최근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수요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금년도 재정소요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더욱이 2026년도 사업 역시 8월 현재 이미 계획된 375억원의 보증공급 규모 중 약 75.5%에 해당하는 283억 2천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당초 예상보다 사업수요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따라서 금번 추경의 5억원 증액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한다기보다는, 본예산에서 일부 감액 편성한 계속사업의 소요재원을 추경을 통해 보완하여 당초 통상적인 출연규모로 조정하는 성격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본예산 중심의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필요

-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새로운 재정수요나 재정여건의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과거 사업실적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요 예측이 가능한 계속사업의 재원을 본예산에서 축소 편성한 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추경예산의 취지와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특히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본예산이 실제 사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예산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의회의 본예산 심의 및 재정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본 사업과 같이 사업실적과 지원수요가 축적되어 연간 재정소요를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 과거 지원 실적과 예상수요 및 출연에 따른 보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 규모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예산편성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자금수요와 사업실적을 고려할 때 금번 5억원의 추가 출연 필요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최근 까지 매년 1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편성해 온 계속사업에 대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서 이를 5억원으로 감액한 후 동일한 규모를 추경에서 다시 증액하는 것은, 사업수요의 변화에 따른 추경이라기보다 본예산에서 감액한 재원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에는 계속사업의 특성과 과거 실적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실제 소요재원을 충실히 반영하고,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본예산 중심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	630,116	280,116	350,000

○ 공공기여시설 이전에 따른 추경 편성

- 서초창업스테이션은 창업가 발굴·지원, 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운영되는 창업지원시설로, 2019년 개관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6년도 본예산은 2억 8,011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내 공공기여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증액예산은 공간조성 설계용역비 3,000만원, 공간조성 공사비 2억 1,000만원, 기존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비 5,500만원, 가구·집기 구입비 5,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여시설이 2026년 8월 25일 준공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창업스테이션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임차시설의 임차료를 절감하고, 교육장·상담실·1인 오피스 등 창업지원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전 필요성과 추경 편성의 예측 가능성

- 공공기여시설을 활용하여 기존 임차시설에서 이전함으로써 연간 약 4,183만원의 임차료를 절감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자체의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 효율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설 이전은 단순히 일회성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창업스테이션의 운영방식과 지속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금번 추경 편성의 경위와 본예산 반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집행부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해당 공공기여시설을 창업스테이션 이전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26년 6월경 이전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금번 추경 편성의 시급성, 불가피성, 타당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제시는 아래와 같음.

추경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 타당성	
구 분	세부 사유
시급성	- 이전 대상 공공기여시설이 2026년 8월 25일 준공됨에 따라, 준공 이후 신속한 입주를

	위해 설계 및 공간 조성 공사를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간 조성이 지연될 경우 신규 시설의 공실 기간이 늘어나고 기존 시설의 임차료 부담(월 3,486천원)도 지속될 수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불가피성	-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해당 공공기여시설을 창업스테이션 이전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간 조성비를 반영할 수 없었음. - 이후 관계부서 협의와 시설 활용계획 검토를 거쳐 창업스테이션 이전 대상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설계비, 공사비, 기존 시설 원상복구비 및 집기 구입비 등 추가 예산 수요가 발생하여 추경 편성이 불가피함.
타당성	- 공공기여시설로 이전할 경우 기존 시설에 소요되는 연간 약 4천만 원의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교육장·상담실·1인 오피스·운영사무공간 등을 조성하여 창업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적기에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신규 시설의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따라서 공공기여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최초로 검토된 시점과 이전 대상시설 및 이전계획이 최종 확정된 시점, 본예산 편성 당시 이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보다 조기에 구체화하여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 산출근거 및 집행 가능성 검토

- 금번 증액예산 3억 5,000만원은 설계용역, 공간조성 공사, 기존 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년도 추경사업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각 항목별 산출근거와 사업물량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관련 공사비 등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공간조성 관련 공사비 등 산출내역

- ☐ 설계비(30,000천원)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계 포함
- ☐ 공간조성 공사비(265,000천원)

	기존 창업스테이션 (2019년)	이전 창업스테이션 (2026년)	비 고
면 적	186.77m ²	217.42m ²	
조성 단가	약 133만원/m ²	약 121만원/m ²	물품 구입비 포함
공 사 비	250,000,000원	265,000,000원	

- 이전 공간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표준적인 마감재를 적용하고, 창업지원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공사를 중심으로 조성 범위를 설정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기존 조성 사례보다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공사 범위와 마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m²당 조성 단가를 낮게 산정하였음

- ☐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비(55,000천원)

: 전기·통신·소방시설 복구 및 역사 운영시간을 고려한 야간작업 비용 소요 등

- 제출된 산출내역에 따르면 공간조성 공사비는 m²당 약 1,210천원으로, 기존 창업스테이션 조성 당시의 m²당 약 1,330천원보다 낮은 수준임. 이전 공간의 면적이 증가하였음에도 표준적인 마감재를 적용하고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공사를 중심으로 조성 범위를 설정한 점을 고려할 때, 단가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향후 설계 과정에서 공종별 물량과 단가를 구체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번 추경이 2026년 8월 준공된 시설의 이전을 위한 것인 만큼, 추경 의결 이후 설계, 공사, 가구·집기 구입 및 이전을 거쳐 연내 실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계획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월이나 집행잔액 발생으로 이

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기간과 공사절차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효과 검토

- 공공기여시설로 이전할 경우 기존 시설의 임차료 연간 약 4,18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금번 추경에서 3억 5,000만원의 초기 시설조성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연간 임차료 절감액만으로 사업의 재정효과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시설조성비와 철거·원상복구비, 가구·집기 구입비 등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이전 이후의 관리·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순수한 재정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기여시설의 무상 또는 저비용 활용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절감 효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전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창업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서초창업스테이션을 공공기여시설로 이전하여 기존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지원 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 취지와 이전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금번 추경은 기존 운영예산과 별도로 3억 5,000만원의 상당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본예산 편성 당시 이전계획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이전 대상시설의 활용 및 사업계획이 적기에 확정되었는지, 시설조성 및 철거·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추경 의결 이후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공기여시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절감 효과와 함께 금번 초기 시설조성비 및 향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시설 이전과 같이 중장기적인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가능한 한 사전에 사업계획과 재원계획을 구체화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은 불가피한 추가 재정수요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보다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골목상권 활성화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골목활성화	1,509,700	1,349,700	160,000

○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판촉활동과 상권별 행사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상권 유입과 추가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양재아트살롱, 서리풀 아트테리어, 상권 활성화 이벤트, 상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골목상권 행사와 연계한 판촉지원비 1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소비촉진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양재아트살롱	· 장소 : 양재천 일원(수변무대~영동1교), · 기간 : '26. 4월 ~ 10월(혹서기 미운영) · 사업목적 : 양재천길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및 명소화를 위한 로컬행사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수공예품·일상소품 판매, 체험존·로컬이벤트 등 서울대표 문화마켓 운영 · 규모 : 회당 소상공인 및 공예작가 55팀 참여
서리풀 아트테리어	· 사업내용 : 지역예술가와 연계한 소상공인 가게 내·외부 디자인개선 · 사업기간 : '26.1. ~ 11.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가게 100개소, 지역예술가 16명 · 지원규모 : 재료비 2,900천원, 예술가 활동비 6,000천원
상권 활성화 이벤트	· 사업목적 :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 '26.1. ~ 12. · 사업내용 : 각 상권별 축제 등 이벤트 개최 (잠원하길 신비파티, 청계로와 페스티벌, 방배카페 골목페스타 등)
상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 대 상 지 : 양재천길, 양재말죽거리, 방배사이길, 방배카페골목 등 · 주요내용 : 시설물 전기료·유지보수비, 사인물 설치비 등

○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 및 기존 예산과의 관계

- 집행부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로 상반기 골목상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서울시 골목상권 행사 지원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이후 결정됨에 따라 하반기 행사와 연계한 판촉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행사 일정 조정이나 서

울시 지원사업의 사후 결정은 사업 추진시기와 재원확보 시점의 변동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구비 판촉지원비를 추경으로 편성해야 하는 직접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서울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확정시점과 지원내용, 이에 따른 서초구의 대응사업 및 구비 부담의 필요성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 편성 당시 해당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불어 금번 추경 편성의 시급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제시는 아래와 같음.

집행부 의견(추경사업의 시급성 등)

시급성	- 상반기 제9회 동시지방선거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골목상권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 편성되어있음. 이에 따라 골목상권 행사 개최시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조속한 예산 확보 필요
불가피성	- 최근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골목상권 어려움이 가중되어 오고 있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시적인 방안이 필요한 바 금회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타당성	- 판촉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 상권 내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추가소비를 유도 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 한편, 기정예산 13억 4,970만원 중 현재 11억 8,168만5천원이 집행되어 87.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어 하반기 행사에 집행될 예정임.

기존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
계	1,349,700	1,181,685	168,015	
사 무 관 리 비	9,200	4,440	4,760	행사차출 경비
공 공 운 영 비	8,000	6,115	1,885	상권시설물 전기요금 지출
행 사 운 영 비	150,000	0	150,000	하반기 행사 진행후 집행 예정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2,500	2,176	324	사업 간담회 등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1,160,000	1,160,000	0	양재아트살롱, 서리풀 아트테리어
시 설 비	20,000	8,954	11,046	상권 시설물 관리

- 따라서 금번 추경으로 추가 편성되는 판촉지원비가 기존 행사운영비로 추진하는 하반기 행사와 사업내용이나 지원대상 측면에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별도의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 기존 행사운영비의 집행계획과 추경사업의 추진시기를 함께 검토하여, 기정예산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판촉지원비 산출근거 및 지원대상 적정성

- 금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판촉지원비는 12개소에 개소당 1,200만원 씩 총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권쿠폰비 1,000만원, 홍보비 100만원, 운영비 100만원으로 아래 집행부 회신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세부산출 내역

☐ 판촉지원비 세부 산출내역표

(단위:천원)

항목	세부항목	금액	산출내역
상 권 쿠폰 비	상 권 쿠폰 비	10,000	- 지류쿠폰(3천원~10천원) - 상권당 평균 200개 점포*50천원
사 업 운 영 비	홍 보 비	1,000	디자인 및 인쇄, 현수막, 문자발송 비용 등
	운 영 비	1,000	인건비, 임차비 등

- 1개의 상권당 상권별 쿠폰발행비용 10,000천원과 부대비용(홍보비, 사무관리비) 2,000천원을 반영하여 12,000천원으로 산출하였음

- 집행부는 10개 골목형 상점가를 산정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추정 편성은 1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대상 수와 산출근거 간 일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12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존 10개 골목형 상점가 외 2개소를 추가한 사유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필요성

- 판촉지원사업은 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의 상권 유입과 추가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단순한 일회성 소비촉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로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성과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향후에는 쿠폰 발행 및 사용실적, 참여 점포 수, 소비자 이용건수,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효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향

후 유사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지원규모 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 골목상권의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13억 4,970만원에 1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업인 만큼,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과 추가 재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 특히 지방선거에 따른 행사 일정 조정과 서울시 지원사업의 사후 결정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유였는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판촉지원이 일시적인 소비증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투입재원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초 AICT센터 운영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서초 AICT센터 운영	6,081,490	5,984,490	97,000

○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금번 추경은 서초AICT센터 입주 AI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투자기관·대기업·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서초AICT 데모데이」 개최 비용 97,000천원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업 IR 피칭, 투자·비즈니스 상담, 기업 전시·체험부스, AI토크콘서트 및 네트워킹 등으로, 입주기업과 투자자 간 접점을 확대하고 후속 투자 및 사업협력으로 연계하려는 사업임.
- AI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화와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가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입주기업의 투자역량 강화와 투자기관과의 연계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고, 특히 우수기업센터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별 투자수요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예산 미편성 및 추경 편성의 적정성

- 집행부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우수기업센터가 공사 및 최초 입주기업 모집 단계에 있어 입주기업의 투자수요와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후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고 IR데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추경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및 성장 지원은 서초AICT센터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핵심적인 기업지원 분야라는 점에서, 센터 개관 및 입주기업 모집 단계에서부터 일정 수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와

특히 금번 사업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수요의 발생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 당시 구체화되지 않았던 기존 기업지원 기능을 별도의 대규모 행사로 확대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추경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사유가 단순히 입주기업의 투자수요가 확인되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아울러 투자유치 지원은 시기성이 중요한 분야일 수 있으나, 그 시급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투자수요, 참여기업의 준비 정도, 투자기관 참여 가능성 및 행사 개최 시 예상되는 구체적인 투자성과등이 객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곤란했던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과 사업 추진시기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한편 금번 추경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제시는 아래와 같음.

세부산출 내역

시급성	○ AI·투자 분야 전문가 자문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결과, 기업의 투자유치와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u>IR데이 및 데모데이</u> 등 대규모로 기업과 투자자가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u>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지속 제시</u> ○ 기업에게 <u>투자는 성장의 핵심이며 투자유치의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u>, 현재 우수기업센터 입주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투자상담·네트워킹 등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u>현 시점이 투자지원의 적기로 판단됨</u>
불가피성	○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우수기업센터가 공사 및 최초 입주기업 모집 단계로, 입주기업의 투자수요와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음

	○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고 3월 IR데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 행사에 대한 기업 수요와 필요성이 구체화되어, 적기추진을 위해 추경 편성 불가피
타당성	○ 데모데이는 단순 홍보·전시행사가 아닌 기업 IR·투자상담 및 투자기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 이후에도 후속 투자검토와 성과관리를 통해 <u>기업 유치·성장·재투자</u> 로 이어지는 <u>서초AICT 투자생태계</u> 를 구축 ○ <u>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u> 하고, AI 기술 전시·체험부스 운영 및 특구 성과 공유를 통해 주민도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

○ 예산편성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 금번 추경예산 97,000천원은 기획·운영비 15,060천원, 부스·공간조성비 30,600천원, 홍보물 및 영상제작비 13,04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18,000천원, 제경비 20,300천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세부산출 내역		
구 분	금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기획운영	15,060	- 총괄기획 및 세부시나리오 등 계획수립 : 3,000천원 - 운영인력 인건비 (총괄·음향·스텝 등) : 12,060천원
부스 공간조성	30,600	- 행사 통합다지안(공간,부스,홍보물 등) : 3,000천원 - 기업부스·사이니지 설치(20개) : 23,000천원 - 포토존 등 공간연출 : 4,600천원
홍보물 및 영상 제작	13,040	- 리플릿(500부), 현수막, 배너, 명찰 등 : 4,040천원 - 서초AICT 홍보영상/기업 안내영상 : 9,000천원
프로그램	18,000	- 전문사회자 및 토크콘서트 출연진 : 9,000천원 - 프로그램 경품 및 시상 등 : 9,000천원

제경비	20,300	-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 : 20,300천원
합 계	97,000	

- 사업의 핵심 목적이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및 사업 확장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상당 부분이 기업부스 및 공간조성, 홍보물·영상 제작, 전문사회자·출연진, 경품·시상 등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구조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와 더불어 특히 부스·공간조성비 30,600천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보물 및 영상제작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할 경우 행사 운영 및 홍보성 경비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에 따라 각 비용이 투자유치라는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지, 행사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투자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필요

- 데모데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사 자체의 개최나 기업 간 네트워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에 있음에 따라 행사 참여기업 수나 투자기관 참석 규모와 같은 단순한 행사실적에 그치지 않고, ▲IR 참여기업 수 ▲투자기관 및 기업 관계자 참여 현황 ▲투자상담 및 후속 미팅 건수 ▲투자검토 기업 수 ▲실제 투자유치 금액 ▲사업협력 및 후속 계약 등 실질적인 투자·사업 성과를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데모데이 이후 투자기관의 후속 검토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행사 종료를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후속 상담과 투자검토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등 사후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초AICT센터가 향후 데모데이, IR데이, 네트워킹 등 유사한 기업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별 행사를 그때그때 추경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입주기업의 수요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전체를 연간 단위로 계획하고, 필요한 재정소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서초AICT센터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및 성장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투자기관과의 연계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97,000천원의 신규 행사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하는 만큼, 단순히 입주기업의 투자수요가 확인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무엇보다 본 사업의 성패는 행사 규모나 참여인원보다 실제 입주기업의 투자유치와 사업 확장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투자상담·후속 투자검토·실제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번 추경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추경으로 추진해

야 할 시급성과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투자성과가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센터의 기업지원 수요와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행사성 사업의 사후적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육지원과】

□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650,237	0	650,237

- 본 사업은 서초교육지원센터를 현재 서초1동주민센터 내 시설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내 공공기여시설로 이전하고, 기존 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여 디지털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50,237천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려는 것임.
- 집행부는 기존 센터가 약 76평 규모로 협소하고 주민센터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주민자치 공간 환원 및 교육공간 확충이 필요하며, 이전 예정 시설은 전용면적 313.31㎡(약 94.8평)로 기존보다 약 25% 확대됨에 따라 학생 맞춤형 교육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전 대상 시설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기여시설로 확보되어 별도의 건물 임차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교육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사업은 새로운 교육지원 기능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기보다 기존 센터의 이전 및 기능 재편사업에 해당하므로, 공간 확충 자체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미래기술 체험 등 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예상 이용인원 등을 구체화하여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추경 전액 신규 편성의 적정성

- 본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물품 구입을 완료하고, 2027년 신학기부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650,237천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이전시설의 준공시기와 신학기 운영 일정을 고려할 때 금년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이전 대상 시설은 공공기여시설로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준공 일정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6억 5천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전액 순증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기여시설의 확보 및 준공 일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설계 및 공사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번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테리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인테리어 공사비는 총 558,250천원으로, 전용면적 313.31 m^2 를 기준으로 m^2 당 약 1,782천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집행부는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강동구·강남구·양천구의 유사 교육·복지시설 리모델링 사례를 비교자료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공사비 산정근거 및 산출 내역			
□ 인테리어 공사비(558,250천원)			
산 출 근 거	총 공사비 (A)	연면적 (B)	m^2 당 공사비 (A/B)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558,250천원	313.31 m^2	1,782천원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사례 : 강동구 강동50플러스센터 리모델링)	3,313,822천원	1,956 m^2	2,077천원
2022년 강남구 강남미래교육센터	2,817,269천원	1,020.5 m^2	2,761천원
2023년 양천구 넓은들미래교육센터	420,000천원	216.1 m^2	1,860천원
2023년 양천구 목동미래교육센터	750,000천원	403.3 m^2	1,944천원

- 위와 같이 제시된 사례의 m^2 당 공사비가 약 1,860천원에서 2,761천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본 사업의 m^2 당 공사비 1,782천원은 비교사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유사사례와의 단순한 단가 비교만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철거·실내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가 실제 공사범위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종별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적정성

-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80,000천원으로, 책상·의자, 전자철판, 음향장비, 컴퓨터, 태블릿PC, 상담용 가구 등 교육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단가는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단가를 기준으로 아래 세부 산출내역과 같이 산정하고 있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출 내역

품목	수량(개)	단가(원)	산출내역(원)	비 고
총계			80,000,000	
1인용 책상	50	400,000	20,000,000	
1인용 의자	50	150,000	7,500,000	
강연대	2	600,000	1,200,000	
전자철판	2	4,000,000	8,000,000	
무선마이크+수신기	2	1,000,000	2,000,000	
스피커	8	800,000	6,400,000	
데스크탑 PC	3	1,500,000	4,500,000	
모니터	3	250,000	750,000	
공기청정기	3	750,000	2,250,000	
상담용 테이블	1	550,000	550,000	
상담용 의자	4	300,000	1,200,000	
캐비닛	4	400,000	1,600,000	
원형탁자	2	400,000	800,000	
스툴	18	250,000	4,500,000	
탁자	5	250,000	1,250,000	
소파	1	1,000,000	1,000,000	
태블릿PC	30	550,000	16,500,000	

※ 산출근거 :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단가 기준('26. 8월 기준)

- 위와 같이 제시된 세부내역상 태블릿PC 30대 16,500천원, 책상·의자 27,500천원, 전자철판 8,000천원, 음향장비 8,400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물품별 단가 산정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신규 물품 취득에 8천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센터

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전자기기·가구 등의 이전 및 재사용 가능 여부 및 신규 취득한 전산장비 및 교육기자재의 유지관리와 향후 교체비용 까지 고려하여, 단순한 초기 시설투자에 그치지 않는 효율적인 자산관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기존 서초교육지원센터의 협소한 공간과 주민센터 내 시설 점유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기여시설을 활용하여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공간으로 확대·개편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전시설의 준공 일정과 2027년 신학기 운영을 고려할 때 금년도에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구입을 추진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질적으로 기존 센터의 이전사업임에도 650,237천원 전액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고 있는 만큼,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비는 비교사례와 비교할 때 단가가 과다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공종별 세부 산출근거를 토대로 실제 공사범위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0천원은 기존 물품의 재사용 가능성과 실제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신규 취득 물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 후에는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미래기술 체험 등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기

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이전의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추경 전액 신규 편성의 불가피성, 공사비의 세부 산출 적정성 및 물품 신규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중복구매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후환경과】

□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기부금	32,000	0	32,000

○ 추경 편성의 적정성

- 본 사업은 민간기업인 (주)기아의 지정기부금 32,000천원을 재원으로 관내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전액 신규 편성하는 사업임. 집행부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기부금 유치 여부 및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026년 4월 기부금이 확정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확보 여부가 불확정되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고, 이후 민간기부금이라는 새로운 재원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금번 추경 편성의 사유는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민간기부금이 확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확보된 재원을 금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과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 내용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14,400천원)

프로그램명	주요 추진사항
기후요정 초록이 에코교실	○ 목 적 :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연극과 체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유아기부터 환경친화적 생활습관과 생태감수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기간 : 2026. 9 ~ 12월 ○ 운영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개소), 약 1,500명 ○ 운영규모 : 기관별 2차시, 총 60회 - 1차시 :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유아 환경연극 - 2차시 : 활동지를 활용한 참여형 환경 체험수업 ○ 주요내용 - 기후요정 '초록이'와 함께 기후위기의 원인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방법 알아보기 - 연극 관람 후 활동지를 활용한 체험교육을 통해 교육내용을 일상생활 실천으로 연계 - 참여기관별별 2회 환경교육 운영(총 60회)

☐ 탄소중립 실천행사 및 캠페인(17,600천원)

탄소제로 환경놀이터	○ 목 적 : 학교를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체험공간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일시 : 2026. 10월 중 ○ 운영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1개소), 약 600명 ○ 주요내용 - 에너지 절약, 생태환경,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한 체험부스 운영 - 학생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운영 - 개인컵 사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부대행사 추진
---------------	--

- 특히 기부금이 4월에 확정되었음에도 실제 사업은 9월부터 추진될 예

정인 만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한지와 추경 편성이 단순히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기간 및 추진의 실효성

- 본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추진되며, 「기후요정 초록이 에코교실」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개소,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총 60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탄소제로 환경놀이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개소에서 약 6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후요정 초록이 에코교실」은 환경연극과 체험수업을 결합하여 유아의 환경감수성과 탄소중립 실천의식을 높이고, 「탄소제로 환경놀이터」는 에너지·생태·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추경 의결 이후 참여기관 모집, 일정 조정, 강사 섭외 및 교육자료 준비 등을 단기간에 완료하여야 하는 만큼, 계획된 교육 및 행사를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준비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환경교육의 성과는 단순한 교육 횟수나 참여인원보다는 교육내용이 실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므로, 짧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외형적인 사업량을 확대하기보다는 교육의 완성도와 참여자의 체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산출의 적정성

- 총 32,000천원의 사업비 중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4,400천원, 「탄소중립 실천행사 및 캠페인」에 17,6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예산 세부 산출내역			
구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고
환경 교육 프로그램	14,400	○ 강사료 - 환경연극 강사료 100,000원×3명×30회 = 9,000,000원 - 활동지 연계수업 강사료 50,000원×30회 = 1,500,000원 ○ 환경교육 보조인력 10,000원×20시간×4명 = 800,000원 ○ 교육운영물품 구입 - 3,100명×1,000명 = 3,100,000원	* 지방자치단체 인 재 개 발 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일반강의-3급)
탄소중립 실천행사 및 캠페인	17,600	○ 탄소중립 실천행사 및 캠페인(환경놀이터 운영) - 체험재료 구입 등 12,500원×600명 = 7,500,000원 (에너지, 생태, 자원순환 부스 운영 관련 체험재료 등) - 운영물품 및 장비 임차 등 10,100,000원 (테이블, 의자, 운영부스(캐노피), 트러스 및 무대, 음향, 현수막 등)	

- 위와 같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강사료, 보조인력비 및 교육운영물품비 등 교육 자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는 반면, 탄소중립 실천행사 및 캠페인은 총 17,600천원 중 체험재료비 7,500천원과 운영물품·장비 임차비 10,1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행사 관련 시설·장비 임차비가 전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테이블·의자·캐노피·트러스 및 무대·음향·현수막 등의 임차비로 10,1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해당 비용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지, 학교시설이나 기존 공공시설 등을 활용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이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의 확산에 있는 만큼, 행사 규모나 외형을 확대하는 데 재원이 집중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지속가능성

- 본 사업은 민간기업의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하여 별도의 구비 부담 없이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상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다만 민간기부금에 의존하는 사업은 향후 기부금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년도 사업이 일회성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향후 구의 환경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향후 구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지속·확대할 경우, 당초 민간기부금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이 새로운 재정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종료 후 성과와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심사사항

- 금번 사업은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만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심사 시 확인사항

- 2026년 4월 기부금 확정 이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추경 편성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 현재까지 참여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사전 협의 또는 참여 의향 확보 여부
- 9~12월 중 총 60회 교육과 600명 규모의 행사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집행계획
- 환경놀이터 운영에 편성된 10,100천원의 장비·물품 임차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비용 절감 가능성
- 금년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및 향후 사업의 지속·확대 여부에 대한 계획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민간기부금이 이후 확보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원 확보를 계기로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사유는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추경예산의 편성은 단순히 재원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본 사업은 하반기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교육과 행사를 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의 연내 집행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실성과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체 사업비 중 행사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임차비가 상당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목적에 직접 기여하는 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기부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후 성과와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번 추정 편성은 민간기부금 확보 경위와 사업 추진 취지를 고려할 때 편성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라는 점과 행사성 경비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실제 교육효과와 예산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민간기부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속가능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스마트도시과】

□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183,214	154,214	29,000

○ 사업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서울시가 주최·주관하는 「스마트라이프워크 2026」에 서초구 공동 전시관을 조성하여 서초구의 AI·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관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국내외 관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9,000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임.

- 「스마트라이프워크」는 2024년부터 개최된 국제 규모의 스마트도시 행사로, 2026년에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코엑스 A·B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AI·로봇·모빌리티·스마트홈 등 도시생활 혁신기술 전시와 국제포럼, 컨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행사 개요는 아래와 같음.

스마트라이프워크 행사 개요

구분	내용
전시관	AI, 로봇 모빌리티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등 도시 생활 혁신 솔루션 중심 전시
시상	(서울 스마트도시 상) 혁신적인 기술과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스마트도시 발전에 기여한 도시, 기관, 기업 등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국제포럼	글로벌 스마트도시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 공유 피지컬 AI 등 최신동향 중심 혁신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비즈니스 프로그램	국내 ICT기업의 우수 기술 홍보 및 바이어·도시 관계자 연결 (B2B, B2G)

- 집행부는 54㎡ 규모의 공동관에 서초구 정책존과 관내 혁신기업 5개사를 참여시키고, AI 체험 콘텐츠와 기업별 기술·제품 시연 및 비즈니스 상담 등을 운영하여 서초구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참여기업의 판로·투자 및 사업협력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추정 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 타당성

- 본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29,000천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국제 규모의 스마트도시 행사에 참여하여 서초구의 AI·스마트도시 정책과 관내 혁신기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AICT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구가 공동관을 조성하여 참여기업의 전시회 참가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투자자·바이어 등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내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기대되고, 다만 본 사업은 국제행사 참여를 위한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만큼, 행사 개최가 임박한 상황에서 참여기업 선정, 전시콘텐츠 구성, 부스 시공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시관 조성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단순한 정책홍보나 행사 참여를 넘어 관내 기업의 판로·투자·사업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시관 운영 및 기업지원의 실효성

- 54m² 규모의 공동관에 서초구 정책존과 5개 기업의 기술·제품을 함께 전시하는 방식은 구 정책과 기업을 연계하여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콘텐츠를 운영할 경우 전시내용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 시 행사 주제와의 연계성, 기술 경쟁력, 국내외 사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업별 기술·제품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시콘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행사에서 운영되는 PYC, IR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외 바이어·투자자·도시 관계자와의 상담이 실질적인 사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이후에도 투자·계약·업무협약·판로개척 등 후속성 과를 일정기간 관리할 필요성과 이를 통해 단순한 방문객 수나 상담건 수에 그치지 않고 공동관 운영이 실제 관내 기업의 성장과 사업기회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산출의 적정성

- 총 29,000천원은 부스 임차 및 등록비 13,200천원, 부스 시공비 13,300천원, 홍보물 제작비 2,5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산출 내역표		
항 목	산출내역	소요금액(천원) ※부가세 포함
부스 임차 및 등록비	프리미엄 블록 부스(6m×3m) 4,400천원 × 3개	13,200
부스 시공비	구조·전기·조명공사, SIGN(로고 등), 전시임대비품, 기타경비(바닥재 등)	13,300
홍보물 제작	3단 리플렛 1500부 (※ 디자인 인쇄접지 포함)	2,500

- 전체 사업비 29,000천원 중 부스 임차 및 등록비와 부스 시공비가 26,500천원으로 약 91.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비 대부분이 전시공간 확보 및 조성에 투입되는 구조이고, 특히 프리미엄 블록 부스 3개에 13,200천원을 편성하고 별도로 13,300천원의 시공비를 편성하고 있음.
- 부스 시공비가 구조·전기·조명·SIGN·전시비품 및 바닥재 등으로 포괄

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항목별 물량과 단가를 면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설·장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와 함께 홍보물 제작 역시 행사 참석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인쇄물 제작에 그치지보다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 제공 등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국제 규모의 스마트도시 행사에 서초구 공동관을 조성하여 구의 AI·스마트도시 정책과 관내 혁신기업의 기술제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기업의 판로·투자 및 사업협력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초구의 AICT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29,000천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부스 임차 및 시공비가 26,500천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91.4%를 차지하고 있어, 전시관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제 정책홍보 및 기업지원 효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터넷전화시스템장비교체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인터넷전화시스템장비교체	73,829	835,400	△761,571

○ 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 본 사업은 기존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제조사인 시스코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단종으로 2023년 12월부터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국내 채널사를 통한 유지보수도 2025년 12월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노후 인터넷전화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 환경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특히 기존 시스템은 장비 고장 시 제조사의 수리 및 부품 공급이 어려워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고, 향후 유지보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만큼, 행정기관의 전화통신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시스템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이에 집행부는 2026년도 본예산에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를 위한 예산 835,400천원을 편성하고, 기능형 인터넷전화기 140대와 일반형 인터넷전화기 2,300대 등 총 2,440대의 전화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전화기 직접 구매방식에서 통신사업자를 통한 임대방식으로 도입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전화기 구매비 761,571천원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임.

○ 전화기 임대 전환에 따른 감추경의 타당성

- 집행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동작구·용산구·영등포구 등 타 자치구의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 사례와 KT·LGU+·SKB 등 통신사업자의 견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시에는 교환기는 임대하되 전화기는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통신 3사 역시 전화기 구매가 필요하다는 견적을 제시하여 전화기 구매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전화기 구매예산을 제외할 경우 입찰 참여업체가 제한되어 유찰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노후 시스템의 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화기 구매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으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기존 교환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기까지 임대하는 조건을 확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화기 구매비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임.
- 이러한 점에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실제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전화기 구매비의 집행 필요성이 소멸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불필요한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임대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한 점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 이미 통신 3사의 견적을 확인하고 있었고, 전화기 임대 가능 여부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당 부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8억3,540만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후 불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7억6,157만원, 즉 전체 예산의 91.2%를 감액하게 된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 임대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함.

- 특히 금번 감추경액이 당초 예산의 91.2%에 달하는 만큼 단순한 집행잔액 발생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본예산 편성 당시의 시장조사와 견적조사, 임대방식 검토의 범위 및 입찰 전 사전협의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감액재원의 신규 장비 구입 적정성

- 금번 추경에서 전화기 구매비 761,571천원을 감액하는 한편, 당초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사업의 잔여예산 73,829천원은 행정전화앱 중계서버 2대 구입 21,381천원과 서초 AI전트 및 AI 계약서류 검토 시스템용 GPU 2장 구입 52,448천원으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편성하고 있음.

예산변경 사유 및 산출내역

(사업#1) 행정전화앱 운영서버 구매

- 예 산 액 : 금21,381천원
- 용 도 : 노후 행정전화앱 중계서버(2대) 교체용 서버 구매
- 예산변경 사유
 - 당초 노후 행정전화앱 메인서버 1대와 중계서버 2대를 구매하여 교체 계획이었으나
 - 메모리 등 반도체 제품 및 서버단가의 상승으로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행정전화앱 메인서버 1대만 확보 가능
 - 이에 행정전화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족분 중계서버 2대에 대해 21,381천원을 예산변경하여 추가 구매

○ 산출내역

항 목	산출내역	소요금액(천원)
컴퓨터서버 (행정전화앱 중계서버)	10,690,500원 × 2대	21,381

(사업#2) GPU 서버 구매

- 예 산 액 : 금52,448천원
- 용 도 : 서초 AI전트 및 AI 계약 서류 검토 시스템용 GPU카드 2장 구매
- 예산변경 사유

- 당초 서초AI전트 및 AI계약검토시스템 서버에 각각 GPU 카드 8장씩 총 16장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GPU 가격상승으로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서버당 7장씩 총 14장만 확보가능
- 이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족분 GPU카드 2장에 대해 52,448천원을 예산변경하여 추가 구매

○ 산출내역

항 목	산출내역	소요금액(천원)
NVIA RTX PRO 6000 GPU카드 (서초AI전트 및 AI계약서류 검토 시스템)	26,224,000원 × 2장	52,448

- 행정전화업 중계서버는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것으로서 행정전화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라는 점에서 정보통신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고, 또한 AI전트 및 AI 계약서류 검토 시스템의 GPU 추가 구입 역시 당초 서버 구성계획보다 GPU 가격이 상승하여 계획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보완조치라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으나, 이는 당초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사업의 직접적인 사업내용과는 별개의 신규 장비 구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³⁾는 세출예산을 편성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예산의 전용)⁴⁾는 정책사업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예산을 전

3)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6. 9.]

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의회가 의결한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 사업의 예산 중 73,829천원을 행정전화앱 서버 및 AI용 GPU 구입에 활용하는 것이 단순한 세부사업 내 예산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전용 또는 추경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예산과목 및 세부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당초 편성 목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AI용 GPU 구입비까지 동일 사업의 잔여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비 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부는 해당 예산의 변경이 어떠한 법적·예산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와 지방의회의 당초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본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의 적정성

- 한편 본예산 당시에는 기능형 140대와 일반형 2,300대 등 총 2,440대의 전화기 구매를 전제로 835,4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추경 관련 집행부 회신의 사업개요에서는 인터넷전화기 2,185대를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화기 수량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산출근거가 기능형 140대와 일반형 2,300대 등 2,440대를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실제 교체 대상이 2,185대로 변경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비 및 임대조건의 변동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 아울러 당초 본예산에는 전화기 구매비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계약에서는 전화기까지 임대방식으로 전환되었는바, 향후 임대기간, 월 임대료, 계약기간 종료 후 처리방법,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포함한 총소요비용을 구매방식과 비교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금년도 예산이 7억 6,157만원 절감되었다는 것만으로 임대방식이 반드시 재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임대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과 장비 교체·유지보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실질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와 노후 장비의 유지보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전화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전화기 구매방식을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여 당초 편성액의 91.2%에 해당하는 761,571천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조사와 견적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전화기 구매비 761,571천원을 포함하여 835,400천원을 편성하였다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부분을 감액하게 된 점은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향후 대규모 정보통신사업의 경우 구매·임대 등 다양한 도입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감액되는 전화기 구매비 중 73,829천원을 행정전화앱 서버 및 AI용 GPU 구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의결된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예산변경이 「지방재정법」 상 허용되는 범위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당초 의결 취지를 벗어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따라서 금번 추경안은 전화기 구매비 761,571천원의 감액 자체는 실제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감액재원 중 73,829천원을 별개의 정보통신·AI 장비 구입에 활용하는 부분은 예산변경의 법적 절차와 사업 간 연계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의 대규모 과다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유사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 내부거래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내부거래지출	586,011	0	586,011

- 본 건 내부거래지출 586,011천원은 성심원 중간의 집 매각대금 586,011천원을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진흥계정)으로 전출하기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해당 재원의 발생 및 수납 경위와 사회복지기금 귀속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한 세입 부분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검토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해당 매각대금은 2025회계연도에 이미 전액 수납되어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된 재원인 만큼, 금번 추경에서 이를 세입으로 재편성하여 기금전출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는 중복 편성된 세입과 연계하여 기금전출금도 함께 감액하여 정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향후 해당 재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일반회계에 수납·결산된 재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2027년도 본예산에 별도의 세입 편성 없이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과】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2,513,046	2,420,160	92,886

○ 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필요성

-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⁶⁾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5)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6) 제44조(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

훈련, 사회적응 및 여가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구립 3개소 및 민간 5개소 등 총 8개소의 주간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발달·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돌봄과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지속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사유

- 금회 추경은 총 92,886천원을 증액하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인건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8,347천원과 민간위탁금 4,53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당초 서울시가 2026년 1월 확정내시 당시 사전 조사된 시설별 운영비 필요 예상액보다 감액된 규모로 교부하였으나, 이후 서울시가 자치구별 주간이용시설의 실제 운영비 소요액을 재조사하여 2026년 7월 30일 변경내시를 통보함에 따라 추가 운영비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비 79,512천원과 구비 8,835천원을 포함한 88,347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구비 90:10의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민간위탁금 4,539천원은 서리풀주간이용센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48,022천원으로 편성된 구비 인건비를 52,561천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추가 소요액임.

○ 추정 편성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서울시의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구비 부담액이 연동되는 보조사업으로, 당초 내시액이 변경되어 추가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비 매칭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금회 증액분은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량적 경비라기보다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른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등 기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추가 재원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한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금회 추정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보조사업의 특성상 향후에도 서울시의 내시 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설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한 사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가능한 범위의 소요재원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 본 사업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운영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회 증액분은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충당되는 재원으로, 시설 운영의 계속성과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내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액분의 성격상 재원 확보 후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내 집행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회 증액분은 서울시의 시설별 운영비 재조사에 따른 변경내시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전체 증액액 92,886천원 중 88,347천원은 시비 79,512천원과 구비 8,835천원의 매칭사업비이며, 나머지 4,539천원도 시설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액으로, 대부분 기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 따라서 금회 추경은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분과 기존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액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향후에는 시설별 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 대

한 사전 수요조사를 강화하여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서울시 내시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432,086	232,086	200,000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

- 본 사업은 노후·협소한 기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곡동 공영주차장 내 주차 복합건물 2층으로 이전하고, 사무공간과 돌봄공간 및 돌봄서재 등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돌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 현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양재2동 소재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서 센터장 등 4명이 근무하며,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사례관리, 심리상담, 긴급돌봄 및 계절학교, 부모교육, 자조모임, 장애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 기준 연간 이용인원은 3,020명, 일평균 이용인원은 약 15명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현 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상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고, 부모교육이나 그룹활동 등을 외부시설을 대관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과 가족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내곡동 주차복합건물 2층에 총 219㎡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 사

무·상담·교육 공간과 함께 장애인 돌봄공간 및 돌봄서재 등을 조성하고, 무장애 환경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존 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긴급돌봄 등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무공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됨.

○ 본예산 미편성 사유의 타당성

- 집행부는 2026년 연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내곡동 주차복합건물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전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후 하반기 추경을 통해 관련 설치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시설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은 사전에 대상 공간과 이전계획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공사범위와 소요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6년 연초에 이전이 결정되어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라면 본예산에 설치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정에는 일정 부분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존 센터의 이전 대상지가 새롭게 조성되는 내곡동 주차복합건물로 결정되었고, 해당 건물의 복지시설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사업대상 및 공사계획이 확정된 이후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려는

사업 추진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은 당초 예측이 어려운 일회성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전 결정 이후 공사 및 자산취득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이 이루어진 만큼 추정 편성에 앞서 공사범위, 공사기간 및 계약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추정 2억원의 산출내역 및 적정성

- 금회 증액액 200,000천원은 전액 구비로 편성되며, 시설비 162,080천원, 시설부대비 1,440천원 및 자산취득비 36,48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세부 산출내역표			(단위 : 천원)
공종	내용	비용	
건축공사	가설공사	현장정리, 고소작업대 리프트 등	8,100
	금속공사	재료분리대, 커튼박스 등	11,346
	창호공사	내부 창호 설치 등	11,346
	유리공사	창호 유리 등	5,673
	도장공사	수송페인트 등	6,483
	수장공사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텀바보드, 타일 등	19,450
	기타공사	운반비, 현장관리 인력 등	1,621
	철거공사	철거비 등	8,914
	조경, 가구공사	제작가구, 인조조경 등	35,658
기계설비공사		에어컨 이설 및 수전공사 등	12,966
전기공사		조명공사 등	24,313
소방공사		스프링클러 조정 및 소화전 매립 등	3,242
통신공사		근무지 내 유선 포설 등	12,968
소계			162,080
시설부대비	현장관리 및 공사 제경비		400
	준공청소 및 현장정리		300

	폐기물 운반·처리비	300
	공사 안내·안전관리 용품	140
	공사용 소모품 및 잡자재	300
소계		1,440
자산취득비	사무공간 조성 (책상, 의자, PC 등)	10,700
	돌봄공간 조성 (소파, 테이블, 매트 등)	8,580
	장애친화 물품 구입 (전자확대도서기, 전동높이조절책상 등)	17,200
소계		36,480
총계		200,000

- 시설비 162,080천원은 건축공사 121,557천원, 전기공사 24,313천원, 소방공사 3,242천원 및 통신공사 12,968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공간을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부공사와 각종 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창호·금속·유리·도장·수장·철거공사뿐만 아니라 전기·소방·통신·기계설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장애인 돌봄 및 이용 시설에 적합한 공간으로 기능을 재구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자산취득비 36,480천원은 책상·의자·PC 등 사무공간 물품 10,700천원, 소파·테이블·매트 등 돌봄공간 물품 8,580천원, 전자확대도서기 및 전동높이조절책상 등 장애친화 물품 17,2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목적과의 연관성은 인정되고, 다만 시설공사비의 경우 총액이 162,080천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만큼, 실제 계약과정에서 공사범위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부는 공종별 산출근거와 견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과도한 사양의 자산취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 현 센터는 약 30평 규모의 협소한 공간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고, 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별도의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시설 여건으로는 센터 이용자의 증가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이전 대상지는 기존 공영주차장과 연계된 주차복합건물 내 공간으로, 장애인 이동을 고려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센터보다 넓은 공간에 사무·상담·교육 기능과 돌봄공간 및 돌봄서재를 함께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내곡동 주차복합건물의 복지시설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내부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공사의 시기를 놓칠 경우 별도의 공사일정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회 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의 시급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기존 센터의 운영 자체를 즉시 중단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절대적인 긴급사업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공사 연계 및 이전 일정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연내 집행가능성

- 집행부는 금회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2026년 10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센터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으

로, 금회 편성액이 신규 시설 건립비가 아닌 기존 건축물 2층 내부의 리모델링 및 시설·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공사대상 및 세부 산출내역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 이후 신속하게 계약절차가 진행될 경우 연내 시설공사 및 일부 자산취득의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금회 추경이 9월 이후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계약 및 착공까지 가용기간이 제한적이고, 공사기간 역시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불과하므로, 사전 설계 및 계약절차가 지연되거나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연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집행부는 추경 확정 즉시 계약 및 공사절차를 추진하고, 공사기간과 준공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사업은 현재 협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센터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및 상담·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전의 필요성과 사업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되고,
- 또한 2026년 연초에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어 본예산 편성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집행부의 설명과, 내곡동 주차복합건물의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센터 내부공사를 추진하려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금회 추경을 통해 이전 설치비를 확보하려는 사유에도 일정 부분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금회 증액액 200,000천원 역시 시설비 162,080천원, 시설부대비 1,440천원 및 자산취득비 36,480천원으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 장애인 이용공간 조성 및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목적과의 연관성도 인정됨.
- 따라서 금회 추경은 노후·협소한 기존 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이전 설치비로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전 결정 시점과 타 시설공사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6년 10월 착공 및 12월 준공이라는 촉박한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공사 및 계약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공사비와 자산취득비가 당초 목적과 산출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0,368,180	28,722,180	1,646,000

○ 생계급여 사업 및 추경 편성 사유

-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설명서상 2026년 사업대상은 4,008가구임.
- 집행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및 지급액 증가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만으로는 연말까지 필요한 급여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2026년 기초생계급여 예산 예상소요액 조사」에 따른 국비 부족 예상액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가 9월 중 통보될 예정임에 따라 1,64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28,722,180천원에서 30,368,180천원으로 5.73% 증가하며, 증액분은 국비 987,600천원, 시비 460,880천원, 구비 197,520천원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재원 분담 비율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재원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최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국비	18,220,908	17,233,308	987,600
시비	8,503,090	8,042,210	460,880
구비	3,644,182	3,446,662	197,520
계	30,368,180	28,722,180	1,646,000

○ 최근 3개년 집행실적 등

- 최근 3개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2023년 19,592,989천원 → 2024년 23,944,985천원 → 2025년 27,133,182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출액 역시 18,902,025천원 → 23,174,063천원 → 26,244,029천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음.

생계급여 3개년도 현황표

(단위: 천원)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2023년	19,592,989	18,902,025	690,964
2024년	23,944,985	23,174,063	770,922
2025년	27,133,182	26,244,029	889,153

-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률이 96%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자격 및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법정 급여로서 연도별 실제 수요에 따라 상당 부분 집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 부족분 발생 시 추경 등을 통한 재원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 또한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생계급여 지출액은 17,505,352천원이며, 지급대상 가구는 1월 3,703가구에서 7월 3,840가구로 증가하고 있어 월별 지급대상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6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월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생계급여	가구	인원	지출액
합 계	26,432	33,812	17,505,352
1월	3,703	4,756	2,465,550
2월	3,726	4,773	2,462,427
3월	3,732	4,771	2,454,531
4월	3,789	4,863	2,527,969
5월	3,807	4,853	2,522,789
6월	3,826	4,894	2,535,151
7월	3,840	4,902	2,536,936

- 월별 지출액은 1월 2,465,550천원에서 7월 2,536,936천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7월 월평균 지출액은 약 2,501,000천원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당초 예산 28,722,180천원에서 7월까지

의 지출액 17,505,352천원을 제외하면 11,216,828천원이 남게 되며, 이를 8~12월 5개월 동안 집행할 경우 월평균 약 2,243,000천원 수준이므로, 현재와 같은 지출 추이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당초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필요한 생계급여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면 추경안의 증액분을 반영할 경우 예산액은 30,368,180천원이 되고, 7월까지의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은 12,862,828천원으로, 8~12월 월평균 약 2,573,000천원을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현재의 월평균 지출액과 향후 수급가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금번 추경을 통해 일정 규모의 부족재원을 보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추경 증액 규모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 금번 증액분 1,646,000천원은 국비 987,600천원, 시비 460,880천원, 구비 197,52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재원의 증가와 이에 연동한 구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생계급여는 법정 급여의 성격상 수급가구 및 수급인원의 변동, 가구별 소득인정액, 급여단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수요 변동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집행부가 제시한 추경 편성 사유는 수급가구 및 지급액 증가와 국비 부족 예상에 따른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1,646,000천원이 수급가구 및 수급인원 증가, 급여단가 변동, 하반기 예상 지급액 등 어떠한 요인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특히 2026년 7월까지 실제 지출액이 17,505,352천원이고 월평균 지출액이 약 2,501,000천원인 상황에서, 추경 증액 후 8~12월에 월평균 약 2,573,000천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만큼, 증액액 1,646,000천원이 단순한 보조금 변경내시액의 반영인지, 실제 하반기 예상 소요액을 산정하여 결정된 금액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 사업설명서상 사업대상은 4,008가구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2026년 7월 실제 지급대상 가구는 3,840가구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대상 추계와 실제 지급현황 간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말 예상 수급가구 및 이에 따른 생계급여 예상 소요액을 근거로 한 증액액 산출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 급여로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며, 최근 3개년간 예산 및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2026년에도 수급가구 및 생계급여 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연말 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 또한 금번 추경은 자체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임의적 증액이라기보다 생계급여 수요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연계하여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는 성격으로, 법정 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1,646,000천원의 증액 규모에 대하여 수급가구 및 수급인원 증가, 급여단가 변동 및 하반기 예상 지급액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예상 소요액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증액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법정 생계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최근 수급가구 및 급여지출 증가 추이를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추경을 통한 부족재원 보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증액분에 대해서도 하반기 예상 소요액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20,742,743	20,110,590	632,153

○ 주거급여 사업 및 추경 편성 사유

-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등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행부는 2026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거복지과의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사업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재원분담 비율을 적용하여 632,15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20,110,590천원에서 20,742,743천원으로 632,153천원, 3.1% 증가하며, 증액분은 국비 379,292천원, 시비 177,003천원, 구비 75,85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증감내역 재원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최종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국비	12,445,646	12,066,354	379,292
시비	5,807,968	5,630,965	177,003
구비	2,489,129	2,413,271	75,858
계	20,742,743	20,110,590	632,153

○ 최근 3개년 집행실적 및 2026년 집행추이

- 최근 3개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023년 15,823,975천원 → 2024년 18,104,933천원 → 2025년 18,780,523천원으로 증가하였고, 지출액도 15,386,013천원 → 17,128,592천원 → 18,446,229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주거급여 3개년도 현황표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2023년	15,823,975	15,386,013	437,962
2024년	18,104,933	17,128,592	976,341
2025년	18,780,523	18,446,229	334,294

-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4.6%~98.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거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로서 실제 수요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연도별로 일정 규모의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본예산 편성 시 최근 집행 실적과 수급가구 변동 추이를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주거급여 지출액은 11,885,646천원이며, 지급가구는 1월 5,429가구에서 7월 5,620가구로 191가구 증가하였고, 지급인원도 7,591명에서 7,862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급대상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월별 지출액 역시 1월 1,641,807천원에서 7월 1,751,834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7월 월평균 지출액은 약 1,698,000천원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6년에도 주거급여 지급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6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월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주거급여	가구	인원	지출액
합계	38,518	53,829	11,885,646
1월	5,429	7,591	1,641,807
2월	5,442	7,611	1,663,962
3월	5,444	7,614	1,666,044
4월	5,504	7,686	1,710,585
5월	5,519	7,690	1,702,344
6월	5,560	7,775	1,749,070
7월	5,620	7,862	1,751,834

- 한편 당초 예산 20,110,590천원에서 7월까지의 지출액 11,885,646천원을 제외하면 잔여 예산은 8,224,944천원이며, 이를 8~12월 5개월 동안 집행할 경우 월평균 약 1,645,000천원수준으로, 이는 1~7월 월평균 지출액 약 1,698,000천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순히 상반기 집행추이를 하반기에 적용할 경우 당초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필요한 주거급여를 충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1~7월 월평균 지출액을 단순 적용할 경우 8~12월 예상 지출액은 약 8,490,000천원으로 추계되어, 당초 예산 잔액 8,224,944천원 대비 약 265,000천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수준인 반면 금번 추경 증액분 632,153천원을 전액 반영할 경우 7월까지의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은 8,857,097천원으로, 8~12월 월평균 약 1,771,000천원을 집행할 수 있는 수준임.
- 따라서 현재까지의 단순 집행추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실제 부족 예상액과 금번 추경 증액액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632,153천원 전액이 하반기 실제 부족재원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추경 증액 규모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 금번 증액분 632,153천원은 국비 379,292천원, 시비 177,003천원, 구비 75,85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주거급여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증액과 이에 연동한 구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주거급여는 단순한 수급가구 수의 변동뿐만 아니라 가

구원 수, 임차료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가구별 실제 지급액 등에 따라 소요예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이후 수급가구 및 지급액 변동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

- 실제 2026년 1~7월 지급현황에서도 지급가구와 지급인원이 증가하고 월별 지출액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거급여에 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설명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의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증액과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는 것도 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집행부가 제시한 추정 사유는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을 뿐, 금번 632,153천원이 수급가구 및 수급인원 증가, 기준임대료 변동, 가구당 평균 지급액 변화 및 하반기 예상 지급액 등을 어떻게 반영하여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특히 1~7월 실제 지출추이를 단순 적용할 경우 당초 예산 대비 하반기 추가 소요액은 약 265,000천원으로 추계되는 반면, 실제 추정 증액액은 632,153천원에 이르고 있어, 증액액이 단순한 현재 집행추이 이상의 수급가구 증가나 급여액 변동 등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번 추정액이 서울시 보조금 변경내시액에 재원분담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연계하여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연말까지의 실제 주거급여 예상 소요액을 산정하여 부족재원을 반영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연말 예상 수급가구 및 지급인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 등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며, 최근 3개년간 예산 및 지출액이 증가하고 집행률도 94.6%~98.2%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2026년에도 지급가구와 월별 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안정적인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금번 추경은 자체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임의적 증액이라기보다 서울시의 주거급여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증액 및 이에 연계한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는 성격으로, 주거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편성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1~7월 실제 집행추이를 기준으로 단순 추계한 하반기 부족 예상액과 금번 추경 증액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632,153천원 전액이 실제 하반기 소요액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수급가구 및 수급인원 증가, 기준임대료 변동, 가구당 평균 지급액 변화 등 증액 규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미흡한 점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급여 지급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확보 측면에서 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의 예상 수급가구 및 지급액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최근 수급가구 및 급여지출 증가 추이를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추경을 통한 부족재원 보전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여성보육과】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4,521,047	4,461,047	60,000

○ 아이돌봄 사업 및 추경 편성 사유

- 본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 1일 10천원, 월 최대 200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집행부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 추가 채용 및 실활동인원 증가로 교통비 소요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교통비 6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증액분은 전액 구비로 충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기정액 4,461,047천원에서 4,521,047천원으로 60,000천원

증가하게 되며, 증액분 전액을 아이돌보미 교통비로 편성하고 있음.

-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교통비 지원실적을 보면 158명의 아이돌보미가 실활동하여 19,874건, 198,74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에 따른 하반기 실활동인원 증가로 추가적인 교통비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교통비 집행내역표			
(단위: 천원)			
구분	총합	집행액(1~7월)	집행예상액(8~12월)
실활동인원(평균)	161명	158명	166명
교통비 건수 (활동인원×20일)	36,474건	19,874건	166명×20일×5개월 = 16,600건
집행 및 예상액 (교통비건수×10천원)	364,740천원 *기정액 300,000천원	198,740천원	16,600건×10천원 = 166,000천원
추경사유	신규채용(26.4월 7명, 26.7월 6명) 및 실활동인원 확대(25년 142명→154명)		

○ 3개년 집행실적 및 2026년 집행추이

- 최근 3개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2024년 300,000천원, 2025년 317,700천원, 2026년 300,000천원이며, 지출액은 각각 289,100천원, 311,770천원, 2026년 7월 현재 198,74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최근 3개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7월 기준)
예산액	300,000	317,700 (변경 17,700 증액(25.11))	300,000
지출액	289,100	311,770	198,740
집행잔액	10,900	5,930	101,260

- 위와 같이 최근 2개년 집행률이 각각 96.4%, 98.1%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이돌보미 교통비는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대부분 집행되는 경비로 볼 수 있으며, 2026년에도 7월까지 당초 예산의 66.2%가 집행된 상황임. 또한 2026년 실활동인원은 2025년 142명에서 15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고, 2026년 4월 7명, 7월 6명 등 총 13명의 신규 아이돌보미가 채용되어 하반기에도 활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26년 1~7월 집행액 198,740천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집행액은 약 28,391천원으로, 이를 단순 연환산할 경우 약 340,7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당초 예산액 300,000천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하반기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실제 활동 여부와 활동일수 등에 따라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경 소요액은 단순 연환산보다는 하반기 예상 활동인원과 활동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추경 증액 규모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 금번 추경 증액액 60,000천원은 아이돌보미 1일 교통비 10천원, 월 최대 20일을 기준으로 연간 25명의 추가 지원을 가정하여 10천원 × 25명 × 20일 × 12개월로 산정하고 있음. 최근 집행실적과 신규채용에 따른 활동인원 증가를 고려하면 당초 예산의 부족 가능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집행부가 제시한 하반기 예상 실활동인원 166명을 기준으로 하

면 8월부터 12월까지 교통비는 $166\text{명} \times 20\text{일} \times 5\text{개월} \times 10\text{천원}$
 $= 166,000\text{천원}$ 으로 산출되며, 1~7월 집행액 198,740천원을 합
 산할 경우 연간 예상 소요액은 364,740천원으로 산출됨. 이는 기정
 예산 300,000천원 대비 64,740천원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금번 추정액 60,000천원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추정 증액 규모는
 하반기 예상 소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금번 추정 산출근거 ‘25명의 추가 지원인원’을 기준으로 한 산정
 방식과 하반기 예상인원 166명에 따른 실제 부족액 64,740천원의
 산출방식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매월 지원 인
 원이 유동적으로 변동하는 사업 특성상 예산서 서식에 이를 세분화하
 여 기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 증가 소요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
 로 나타나 있음.

○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추정 필요성

- 집행부는 2026년도 본예산 수립 시점인 10월 이후인 11월에 2025
 년도 예산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당시에는 활동량 급증과 추가 소요
 예산을 시기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에
 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관련 변동을 예측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가정의 수요와 아이돌보미의 실제 활동량에 따
 라 교통비 소요액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고, 신규 인력의 채용시기 및
 실제 활동규모 역시 본예산 편성 당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으므로, 연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추경으로 부족 재원을 보완하는 것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2026년 7월까지 이미 198,740천원이 집행되었고 하반기에도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부족한 교통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아이돌보미의 안정적인 활동과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아이돌보미의 활동여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신규채용 및 실활동 인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하반기 예상 소요액을 반영할 경우 당초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제시된 집행실적과 하반기 예상액을 기준으로 볼 때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집행실적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요예측을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인력운영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본예산 소요액을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초 초등키움센터 설치비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서초 초등키움센터 설치비 지원	425,900	782,800	△356,900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키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⁷⁾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금번 추경은 방배동 946-8번지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단지 내 306.25㎡ 규모의 초등키움센터 조성을 위한 설치비 중 구비 356,900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제1차 공간확정 심의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구비로 편성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임.

○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액 조정

- 당초 본 사업은 총 410,900천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366,9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천원, 사무관리비 4,000천원을 구비 중 심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제1차 공간확정 심의 결과 방배2

7)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동 초등키움센터 설치가 확정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의 재원 구성이 변경된 것임.

- 국시비 보조금 371,900천원(국비 70,000천원, 시비 301,900천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존 전액 구비로 편성된 구비를 감액하고자 하며 시설비는 국시비 교부된 금액인 698,800천원에서 381,900천원으로 316,900천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시비 교부된 80,000천원에서 40,000천원으로 40,000천원을 감액하여 총 356,900천원의 구비를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시설비 381,900천원은 국비 30,000천원, 시비 301,900천원, 구비 50,000천원으로 재원을 구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천원은 국비로 충당함에 따라 당초 구비로 편성한 해당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감편성 내역표				
(단위:천원)				
구 분	당초	국시비교부	변경	증감
시설비	366,900	698,800	381,900 국)30,000 시)301,900 구)50,000	△316,9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	80,000	40,000 국)40,000	△40,000
사무관리비	4,000	4,000	4,000	-
합 계	410,900	782,800	425,900	△356,900

- 따라서 금번 감액은 당초 계획한 초등키움센터의 시설 규모나 사업내용을 축소하여 사업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당초 구비로 부담할 예정이었던 설치비 일부를 보조재원으로 대체함으로써 구비 부담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감추경의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추경 편성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 해당 시설은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준공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집행부는 2026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시 공간확정 심의를 통해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된 현 시점에서 보조재원에 맞춰 구비 부담액을 조정하는 것은 한정된 지방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특히 금번 추경을 통해 구비 356,900천원을 감액하더라도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최종 사업비 425,900천원으로 당초 계획한 초등키움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2026년 10월 개소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인테리어 공사, 물품 구입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일정에 맞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연내 사업비 집행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공적 돌봄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금번 추경의 356,900천원 감액은 사업 규모나 내용의 축소에 따른

감액이 아니라, 서울시 제1차 공간확정 심의를 통해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당초 구비로 편성한 사업비 일부를 보조재원으로 대체하여 구비 부담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추경을 통한 감액 편성의 사유와 재원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2026년 10월 개소라는 사업 일정을 감안하여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487,500	420,000	67,500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남성근로자로서, 부와 자녀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가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한 경우이며,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음.
- 금번 추경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로 당초 편성한 420,000천원의

로는 10월 이후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7,500천원을 증액하여 총 487,500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 필요성

- 집행부에 따르면 2025년에는 총 268명을 대상으로 1,417건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을 고려한 420,000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지원 신청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2026년 7월 현재까지 총 814건에 대해 314,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106,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20,000천원의 약 74.8%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집행부는 현재와 같은 지급 추이가 지속될 경우 10월 이후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월 평균 22,500천원의 추가 소요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 67,500천원 (22,500천원 × 3개월)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수혜성 경비로서 지원대상 및 지급건수가 증가할 경우 재정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예산 부족으로 적격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개년도 집행실적 및 추경 편성의 적정성

- 최근 3개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예산액

378,000천원 중 334,470천원을 집행하여 43,53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에는 예산액 428,000천원 중 425,060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940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6년에는 7월 기준 314,000천원을 집행하여 기정예산 420,000천원의 74.8%를 집행한 상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높은 집행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지급 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당초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3개년도 집행실적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7월 기준)
예산액	378,000	428,000	420,000
지출액	334,470	425,060	314,000
집행잔액	43,530	2,940	106,000

- 이와 같이 2025년에는 예산액의 99.3%를 집행하였고, 2026년에도 7월까지 기정예산의 74.8%가 집행된 점을 고려하면,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지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번 67,500천원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420,000천원을 편성하였음에도 7개월 만에 기정예산의 74.8%가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의 지원 실적과 대상자 증가 추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금번 증액분 67,500천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월 22,500천원의 추가 소요를 전제로 산정한 만큼, 향후 월별 신청 및 지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가 편성한 예산이 실제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며, 2025년에는 예산액의 99.3%가 집행되고 2026년에도 7월 기준 기정 예산의 74.8%가 집행되는 등 지원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2026년 7월 현재 314,000천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106,000천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지급 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당초 편성액만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번 67,500천원의 증액은 증가한 지원수요에 대응하여 부족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2026년 본예산에 이미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최근 3개년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월별 신청 및 지급 추이, 지원대상자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재정수요를 본 예산에 보다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추경을 통한 반복적인 부족재원 보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 증액분 역시 연말까지 실제 지급수요를 면밀히 관리하여 적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어르신행복과】

□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686,131	0	686,131

○ 이동권 보장 및 사업 필요성

- 본 사업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내·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6년 8월 6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집행부는 2026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11월 버스 이용실적에 대한 교통비를 12월 중 지급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총 686,131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499,097천원은 교통비 지원금 1개월분이고, 나머지 187,034천원은 신청 접수창구 인건비,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비, 물품비 및 홍보비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어르신의 일상적인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 추경 편성의 적정성

- 금회 추경은 2026년 11월 사업 시행에 따른 1개월분의 교통비 지원

금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실비 정산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지급을 위한 사업 착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교통비 지원금 499,097천원 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87,627천원,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비 66,000천원, 접수창구 물품비 24,000천원, 홍보물 제작비 8,707천원 등 187,034천원의 사업관리 및 부대경비가 편성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접수창구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사업 시행 초기에 어르신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이며, 대부분 1회성 성격의 경비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비를 제외한 접수창구 인건비·물품비 및 홍보비 등은 사업 시행을 위한 초기 제반비용으로서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사업은 연간 상당한 규모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1개월분의 지원금만 편성되는 반면 사업 시행을 위한 초기 행정비용이 함께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에는 실제 집행실적을 토대로 연간 지원금과 사업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추경 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타당성에 대하여 집행부는 다수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며, 추경임을 감안하여 1개월분 지원금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집행부 의견(추경 사업의 시급성 등)

구분	내 용
시급성	○ 어르신 버스비 지원 사업은 다수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고, 일상적 이동에 직접 관련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서 조속한 시행 필요성이 높음. 교통비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빠르게 완화할 실질적 필요가 있음.
불가피성	○ 어르신들의 일상 이동에 필수적인 교통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함. 특히 주민 요청이 장기간 누적되어 왔고,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임.
타당성	○ 신규사업이지만 추경임을 감안하여 교통비 지원 1개월분과 최소한의 사업 추진 비용만 편성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대상자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되는 만큼 사업 자체의 추진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향후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금회 추경 편성 이후 실제 이용실적과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간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사업과의 조정 필요

- 한편 서울시도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조례」를 2026년 7월 13일 제정·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업 시행시기와 지원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서울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는 70세 이상, 서초구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집행부는 서울시 사업 시행시 중복 지급 방지 및 기 사업을 시행중인 타자치구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비 절감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음.

서울시 추진경과 및 동향 등

구분	내용
서울시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조례」 제정.시행(2026.07.13.) - 서울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요금 지원(월15회 미만) 예정 ○ 대한노인회 서울연합회 등과 대중교통 정책관련 공청회 공동 개최 계획 -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65세→70세 상향) 등 논의
서울시 동향	○ 서울시는 70세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비 지원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우리구 계획	○ 서울시에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의 방향성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대상과 규모에 대한 재검토로 중복 지급 방지 및 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다만 서울시 사업의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초구가 먼저 사업을 시행할 경우, 향후 서울시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등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간 사업의 역할 및 재정부담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사업 시행 이후 서울시의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사업간 중복을 방지하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사업방식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원액 산정의 적정성

- 금회 교통비 지원금 499,097천원은 2026년 5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73,613명에 실수혜율 60%와 월 평균 지원액 11,300원을 적

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60%의 실수혜율을 신청 가능성, 버스 이용수요 및 타 자치구 집행사례 등을 감안한 추정치로 설명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교통비 지원금 산정기준 및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인원	73,613명	2026.5. 기준 서초구 65세 인구수(행정안전부 인구통계)	비용 추계서 참조
실수혜율	60%	65세 이상 전체 대상자 중 신청 가능성, 버스 이용 수요, 타구 집행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 추정 비율임.	
월 지급액	11,300원	월 최대 2만원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월 교통비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임 ※ 서울 타자치구 평균 참조	

- 다만 60%의 실수혜율과 월 평균 지원액 11,300원은 사업 시행 전의 추정치를 기초로 한 것으로 실제 신청률과 버스 이용행태에 따라 집행액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서초구는 강남구 등 사업을 기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와 비교하여 지하철 역사 및 교통이용 여건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이용수요가 당초 추계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집행부가 사업 초기 예상치 못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 여유를 두어 예산을 산정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규모가 추계액을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 향후 예산편성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후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함.

강남구·종로구 교통비 지급실적

□ 강남구 최근 1년 실 지급실적 분석

지급시기	지급인원	지급액	1인당 분기별 평균 지급액
2025.3월	34,797명	1,010,000,000원	29,026원
2025.6월	39,442명	1,231,000,000원	31,210원
2025.9월	42,292명	1,332,000,000원	31,495원
2026.3월	45,260명	1,376,000,000원	30,402원
계	161,791명	4,949,000,000원	30,589원

□ 종로구 최근 2분기 실 지급실적 분석

지급시기	지급인원	지급액	1인당 평균 지급액
2025.12월	12,200명	287,000,000원	23,525원
2026. 3월	14,000명	478,000,000원	34,143원
계	26,200명	765,000,000원	29,199원

- 서초구의 경우 분기별 최대 6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버스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실비 지원방식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이용횟수와 이용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 시행 후 신청률, 실제 버스 이용 실적 및 1인당 평균 지급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본 예산 편성 시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지원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신규사업 재정운용 검토

- 본 사업은 향후 연간 약 60억원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금회 추경을 통한 연말 사업 착수가 향후 안정적인 본 사업 운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금회 추경에서는 1개월분의 지원금과 함께 사업 시행 초기의 접수창구 운영, 홍보 및 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시행 초기의 일회성 비용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서울시 사업의 시행 여부와 지원기준에 따라 향후 서초구 사업의 대상 및 지원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소요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이 있고,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 금회 추경은 2026년 11월 사업 시행에 필요한 1개월분 교통비 지원금과 초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집행부가 설명하는 접수창구 운영 및 홍보비 등의 초기 비용은 신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성격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원대상 및 사업방식의 중복 또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서초구 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회 추경은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편성·집행하되, 향후 실제 집행실적을 토대로 적정 지원수준과 재정소요를 재산정하고, 서울시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 하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및 운영방식을 탄력 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지원	1,061,903	981,367	80,536

○ 추경 편성사유의 적정성

- 금회 추경은 서울시 가치동행일자리사업의 시비 지원 종료에 따른 시니어라운지 매니저 운영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및 센터 화장실 누수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이 중 가치동행일자리사업은 서울시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참여자의 활동처 배치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이루어질 예정이며, 서초구는 관내 시니어라운지에 시니어라운지 매니저를 배치 하여 시설 운영 및 이용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의 지원은 9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시니어라운지는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기존

매니저의 배치를 유지하기 위해 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임.

산출내역 및 시니어라운지 배치

- 산출 : 10개소 × 3명교대/월(10,320원*월57시간/명) × 3개월
+ 상해보험 : 총30명 × 30,000원/월 × 3개월 = 55,641,600원
- 배치(시니어라운지): 서초1, 반포1, 양재, 방배4 시니어라운지 등

구 분	반포1동당	반포2동당	반포3동당	서초1동당	우면동당	홍씨마을당	시니어자	느티나무쉼터		스마트시니어교육센터
								반포	내곡	
위 치	사평대로 55길 90, 1층 (반포1동)	신반포로 15길 28, 1층 (반포2동)	신반포로 23길 48, 2층 (반포3동)	효령로68길 49-32층 (서초1동)	바우외로4길 6, 2층 (우면동)	홍씨마을길 25, 1층 (내곡동)	방배중앙로 118 (방배4동)	신반포로1 274층 (반포2동)	염곡말길 9, 2층 (내곡동)	사평대로273, 4층 (반포1동)

※ 2026년 하반기 서초3동, 잠원 시니어라운지 개관 예정

- 위와 같이 가치동행일자리 관련 구비는 매니저 인건비 및 상해보험료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운영비·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편성된 것으로, 서울시의 한시적인 시비 지원 종료에 따른 인력 및 운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니어라운지의 연속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특히 사업 종료와 동시에 매니저 배치가 중단될 경우 시설 운영 및 이용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회 구비 편성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인력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시급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집행부의 관련 의견 제시는 아래와 같음.

집행부 의견 제시

구 분	내 용
시급성 불가피성	○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시 사업으로 9월까지 일자리참여활동은 종료됨. 그러나 관내 시니어라운지에 배치하는 시니어라운지 매니저는 연간 지속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함으로 10~12월분 구비 편성함.

- 다만 2026년 하반기 서초3동 및 잠원 시니어라운지의 추가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운영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설별 이용현황과 운영시간, 실제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니저 배치규모 및 운영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체인력 인건비 7,200천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직원 2명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라 발생한 결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인력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라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기능보강사업비 8,000천원은 센터 1층 및 3층 화장실 누수에 따른 오수관 교체 등 시설보수를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기능 회복과 이용자의 불편 및 추가적인 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성의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누수 원인과 보수범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점검 및 견적 등을 토대로 적정 사업비를 산정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용상 고려사항

- 금회 가치동행일자리 관련 구비 투입은 서울시의 사업 지원기간이 7개월로 한정됨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니어라운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인건비와 함께 운영비·시설유지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임.
- 특히 향후 시니어라운지의 추가 개관에 따라 인력 및 운영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년도 사업 운영실적과 시설별 이용수요, 매니저의 실제 업무량 및 배치효과 등을 토대로 적정 인력 및 운영비 규모와 더불어 서울시의 향후 가치동행일자리사업 지원기간 및 지원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시비 지원 종료에 따른 부족분을 매년 구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및 재원분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중장년층의 제2인생 설계와 일·활동을 지원하는 서초50플러스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회 추경은 서울시 가치동행일자리사업의 지원 종료에 따른 시니어라운지 운영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및 시설물 누수에 따른 기능보강비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수요를 반영한 것임.
- 가치동행일자리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 한시적 지원 종료에 따른 3개월간의 인력 및 운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대체인력 인건비와 기능보강비 또한 각각 예측하기 어려운 인력 변동과 시설물 보수 필요성에 따른 추가 소요라는 점에서 금회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시의 시비 지원 이후 구비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와 향후 시니어라운지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니저 배치인원 및 운영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기능보강비는 누수 원인 및

보수범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5,650,290	5,592,919	57,371

○ 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

-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노인복지관의 인건비·시설운영비·사업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여가·교육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서초구는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중앙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복지관에서 건강·여가·교육·사회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금회 추경은 서울시 보조금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66,179천원을 감액하는 한편, 경로식당 식수인원 증가 및 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당초 운영비의 일부를 급식비로 우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영비 부족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비 123,550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57,371천원이 순증하는 것임.

○ 추정 편성사유의 적정성

1. 복지관별 운영보조금 증액 및 구비 부담 규모

- 집행부가 제출한 「운영보조금 세부산출내역표」에 따르면, 금회 운보조금은 방배 노인종합복지관 3,551천원, 양재노인종합복지관 15,525천원, 중앙노인종합복지관 38,295천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7,371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운영보조금 산출내역표			
(단위: 천원)			
복지관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방배노인종합복지관	1,783,352 (시 1,070,012/ 구 713,340)	1,786,903 (시 1,003,833/ 구 783,070)	3,551 (시 △66,179/ 구 69,730)
양재노인종합복지관	1,536,007	1,551,532	15,525
중앙노인종합복지관	1,729,085	1,767,380	38,295
합 계	5,048,444	5,105,815	<u>57,371</u>

- 위 표에서 복지관별 총 운영보조금 증감액만 보면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의 증액 규모가 38,295천원으로 가장 크지만, 자원별 증감내역을 함께 살펴볼 경우 실제 구비 추가 부담액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 69,730천원으로 가장 큰 규모임.
- 특히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보조금이 66,179천원 감액되는 반면 구비는 69,730천원 증가하는 구조로, 금회 추경의 구비 부담 증가가 단순한 복지관별 운영수요 증가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에 따른 자원 조정과 기존 운영비 사용에 따른 보전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복지관별 추정 소요액은 단순히 총액의 증감 규모보다는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자원 변동분과 실제 운영과정에서 추가 발생한 소요

분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시비 감액 및 구비 증액의 재원구조

- 「재원별 세부산출내역표」에 따르면 시비는 1,070,012천원에서 1,003,833천원으로 66,179천원 감액되는 반면, 구비는 3,978,432천원에서 4,101,982천원으로 123,550천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57,371천원이 증가하는 구조임.

재원별 세부산출내역표			
(단위: 천원)			
재원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액
광역보조금(시비)	1,070,012	1,003,833	△66,179
자체재원(구비)	3,978,432	4,101,982	123,550
합 계	5,048,444	5,105,815	<u>57,371</u>

- 시비 66,179천원 감액은 서울시의 2026년도 보조금 최종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확정된 보조재원의 변동 자체는 구에서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에서 추경 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시비 감소에 따라 구비 부담이 123,550천원 증가하는 만큼, 금회 구비 증액분이 서울시 보조금 감소에 따른 재원 대체분인지, 복지관 운영과정에서 실제 추가로 발생한 소요를 보전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시비 66,179천원 감액에 따라 구비 부담이 69,730천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중 시비 확정내시 변동에 따른 사업비 재원 조정분과 기존 운영비를 급식비로 사용함에 따른 보전분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분기별 추가교부액의 성격 및 산정내역

- 「사업 분기별 추가교부액 세부산출내역표」에 따르면 구비 추가교부액 123,550천원은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69,730천원, 양재노인종합복지관 15,525천원, 중앙노인종합복지관 38,295천원으로 배분되어 있음.

사업 분기별 추가교부액 세부산출내역표				
(단위: 천원)				
노인복지관 명	2분기	3분기	4분기	총 요구액
방배노인종합복지관	25,684	25,684	18,362	69,730
양재노인종합복지관	7,800	4,500	3,225	15,525
중앙노인종합복지관	19,240	11,100	7,955	38,295
합 계				<u>123,550</u>

- 위 분기별 금액은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각 분기별로 새롭게 발생하는 추가사업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이후 경로식당 급식비 등에 기존 운영비를 우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영비 부족분 등을 분기별로 배분하여 표시한 것임.
- 따라서 위 표의 금액을 향후 각 분기에 새롭게 필요한 추가 예산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기존 운영비를 급식비 등에 우선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재원 보전액을 분기별로 표시한 내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실제 추정 소요의 성격과 산정근거는 다음의 사업 내용별 세부산출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급식비 및 사업비의 사용용도

- 「사업 내용별 세부산출내역표」에 따르면 구비 추가 소요액 123,550천원은 급식비 86,940천원과 사업비 36,61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는 급식비 33,120천원과 사업비 36,610천원이 편성되어 있음.

사업 내용별 세부산출내역표

(단위: 천원)				
구 분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중앙노인종합복지관	합 계
급 식 비	33,120	15,525	38,295	86,940
사 업 비	36,610	-	-	36,610
합 계	69,730	15,525	38,295	123,550

- 급식비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비용으로서, 실제 식수인원 증가나 식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소요액이 증가하였다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기존 운영비를 급식비로 우선 사용하고 그 부족분을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식인 만큼, 실제 식수인원 및 급식단가의 변동이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비 36,610천원은 급식비와 별개의 소요로서,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당초 시비로 충당될 예정이던 강사비 등 사업비의 재원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하기 위한 것임.
- 사업비 36,610천원은 강사비 등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필수적인 사업비인지, 시비 감액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비 부담으로 전환된 것인지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급식비 역시 실제 식수인원 및 1식당 단가, 식재료비 변동 등을 중심으로 추가 소요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운영비 사용 및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

- 집행부는 3개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에서 식수인원이 증가하고 식재료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운영비의 일부를 2026년 2분기부터 급식비에 우선 사용하였고, 그 결과 부족하게 된 운영비를 금회 추경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라는 점에서, 예상보다 식수인원이 증가하거나 식재료비가 상승하여 당초 급식 관련 예산을 초과한 경우 운영재원을 활용하여 급식 서비스를 유지한 조치에는 일정 부분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기존 운영비를 급식비에 우선 사용한 후 부족한 운영비를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당초 본예산의 항목별 소요예측과 자원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식수인원 증가와 식재료비 상승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라면, 사업연도 중 운영비 조정과 추경 보전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최근 식수인원, 1식당 급식단가 및 식재료비 변동 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본예산에 실제 소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추정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타당성

추경사업 시급성·불가피성·타당성 검토

구 분	집행부 의견	검토의견
시급성	2026년 4분기 복지관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추경 편성 필요	노인복지관은 연중 운영되는 시설로서 운영비 부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불가피성	복지관 이용 어르신 식비 보전을 위해 경로식당 추가 운영비가 필요하여 2026년 2~4분기 운영비를 사용함	경로식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식사 제공을 위해 급식비 부족분을 우선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 운영비를 급식비로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규모는 확인할 필요가 있음.
타당성	구비 추가 보전 예산은 주로 강의 강사료 및 행사비용으로 사용되며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님	복지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비라면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행사·프로그램별 이용수용와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이 금회 추경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급식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시급성과 일정 부분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급식비와 시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재원 조정분은 발생 원인과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의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용상 고려사항

- 금회 추경은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감액과 복지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구비 추가 소요가 함께 반영된 사항으로, 향후 서울시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시비 감액에 따라 구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부족한

재원을 구비로 대체하기보다는, 당초 시비·구비의 재원분담 구조와 사업별 소요액을 함께 검토하여 구비 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로식당의 식수인원 증가나 식재료비 상승이 지속적인 추세라면 이를 사업연도 중 운영비 조정과 추경 보전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복지관별 식수인원과 급식단가, 식재료비 및 운영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본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민간위탁금의 경우 급식비와 일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소요를 사전에 면밀히 구분하여 편성하고, 사업연도 중 예산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규모를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추경을 통한 반복적인 운영비 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 본 사업은 관내 노인복지관 3개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여가·교육·사회참여 및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금회 추경은 서울시 보조금 최종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66,179천원 감액과 경로식당 급식비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운영비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족분 및 일부 사업비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구비 123,550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복지관별로 보면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은 시비 66,179천원 감액에 따라 구비 부담이 69,730천원 증가하는 구조이며, 이 중 급식비 33,120천원과 사업비 36,610천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급식비는 실제 식수인원 및 식재료비 등의 변동을 기준으로, 강사비 등 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및 시비 감액에 따른 재원 부족의 불가피성을 기준으로 각각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식수인원 증가 및 급식비 상승 등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요는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사업연도 중 기존 운영비를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한 후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총 합 검 토 의 건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 등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총 규모 357억원, 일반회계 361억원, 특별회계 △4억원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11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0%가 증가한 361억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171억 8,771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7억 5,876만원, 국·시·비 보조금 35억 3,806만원, 세외수입 26억 368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억 1,449만원이 감소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4,854억 5,857만원, 기타 분야 1,926억 5,440만원, 환경 분야 712억 24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690억 7,88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0억 8,719만원 등으로 세출편성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및 기준인건비 조정에 따른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등 필수적 재정수요가 상당 부분 증액되었으며,

-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중·소상공인 초스피드대출 지원,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서초AICT 센터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 주민생활 분야에서는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공공체육시설 확충, 동행정 민원서비스 개선, 스마트도시 및 기후환경 교육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장애인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아이돌봄 및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이에 우리 구의 금번 추경 편성은 필수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환경개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여 민생 안정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 특히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사업은 감액 편성된 만큼, 사업별 집행 실적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으로 증액된 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VI. 참고자료

1.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2.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조직별)
3.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4.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조직별)
5. 2025년도 일반회계 간주처리내역(1억원 이상)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